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24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4331, 4333, 4336), 국제조세(4651~4653, 4656, 4663, 4666), 관세·관세사법·FTA관세법(4411~3, 4416~4418, 4471~4473), 국세기본법·세무사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4141~4142)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순필 (044-215-4110)
		담당자	사무관	배현중 (hyunjoongbae@korea.kr)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24년 7월 25일(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2024. 7. 25.

기획재정부

# 순서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	1
1. 그간의 추진경과 .....	1
2. 조세정책 여건 .....	2
<참고> '24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	3
II. 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4
III. 세법개정 상세 내용 .....	5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6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6
2) 기업경쟁력 제고 .....	11
3) 자본시장 활성화 .....	14
2. 민생경제 회복 .....	17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17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8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21
3. 조세체계 합리화 .....	23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23
2) 비과세·감면 정비 .....	26
3) 세원투명성 제고 .....	29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32
1) 납세자 편의 제고 .....	32
2) 납세자 권익 보호 .....	33
<참고> '24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35
IV.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37
V. 추진일정 .....	38

#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 1 그간의 추진경과

### □ ['22년]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개편

- **(투자촉진)**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및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
  - \* 중견기업 대상 확대(매출 4→5천억원 미만), 가업상속공제한도 상향(+100억원) 등
- **(민생안정)**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식비·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 등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 확대 및 요건 완화
- **(부동산세제 합리화)**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과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합리화\*
  - \* (증부세) 다주택자 증과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증과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 □ ['23년]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지속,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소상공인\*\* 지원 지속
  - \*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등
- 인구감소·지역소멸 등 미래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 병행
  - \* (인구)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지역)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 등

### □ [올해] 상반기 중 조기시행 과제 수시 개정·조치 완료

-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경제 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 '24년 상반기 중 법령 수시개정 완료
  -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② 48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 ③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1.1.~8.31.),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1.1.~12.31.)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 민생토론회, 「역동경제 로드맵」(24.7.)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 과제 기 발표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주주환원촉진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 2 조세정책 여건

### □ [경제 여건]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 물가\*는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는 양호한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 시현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24.1/4) 3.0 (4) 2.9 (5) 2.7 (6) 2.4 → (하반기<sup>e</sup>) 2% 초중반

\*\*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플러스 지속

- 고물가·고금리 영향 누적 등으로 소상공인·서민층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가능성

### □ [구조적 여건]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 직면

- 저출생 현상,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 생산연령인구 전망(만명, 15~64세)

: ('19) 3,763 → ('23) 3,657 → ('27<sup>e</sup>) 3,518 → ('31<sup>e</sup>) 3,381 → ('35<sup>e</sup>) 3,188

- 성장잠재력 둔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제기

\* 잠재성장률 추정% OECD: ('90년대) 7.8 ('00년대) 4.7 ('10년대) 3.1 ('20년대) 2.0 ('30년대) 1.4

### □ [재정 여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복원 필요

-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부진한 상황, 경기회복 전망\*\* 등 감안 시 하반기부터 세수여건 개선 전망

\* '23년 상장사 영업이익 증감(%): (코스피) △45.0 / (코스닥) △39.8

\*\*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비, %) : ('23실적) 1.4 → ('24전망) 2.6 → ('25전망) 2.2

- 복지지출 증가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요

👉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민생안정을 중점 추진하되,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

□ **대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① **(개정 건의)**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1,412건 세법개정 건의

- \*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해 건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정 건의 청취
  - 중소기업중앙회(4.1.) 세무사회(4.3.), 중견기업연합회(4.5.), 상장사협의회(4.5.)
- \*\*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점검 및 개정 건의사항 청취
  - 가족친화적 중소기업(5.23.), 전통시장(6.5.), 기업형 임대주택(6.21.) 등 총 15건

② **(비과세·감면 평가)**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 도래)\* · 예비타당성평가(신설 예정)\*\* 23건 진행

-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7건) +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14건) : 21건
-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특례 신규 도입시 예타 의무 : 2건

③ **(내부 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 수시 개최

- \*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법간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세제실장, 국장 및 총괄과장 등으로 구성

④ **(대외 의견 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구 분	내 용
▶ 관계기관 간담회	▶ 금융단체,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세제분야 전문가*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 소득·기업·재산·소비·국제조세·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정책방향 점검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II. 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 ②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정책  
목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

추진  
전략

경제의 역동성 지원

-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 기업경쟁력 제고
- ✓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 ✓ 결혼·출산·양육 지원
-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 비과세·감면 정비
- ✓ 세원투명성 제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납세자 편의 제고
- ✓ 납세자 권익 보호

### III. 세법개정 상세 내용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자 고용 지역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전략기술 등 R&amp;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li> <li>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amp;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li> <li>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li> </ul>
기업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li> <li>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li> <li>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li> </ul>
자본 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li> <li>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li> </ul>

#### 2. 민생경제 회복

결혼·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세액공제 신설</li> <li>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li> <li>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li> </ul>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li> <li>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li> </ul>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li> <li>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li> </ul>

#### 3.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li> <li>가상자산 과세 유예</li> <li>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li> </ul>
비과세·감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li> <li>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li> </ul>
세원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li> <li>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li> <li>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li> </ul>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li> <li>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li> </ul>
납세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li> <li>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li> </ul>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지원하여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 강화

## 1) 투자 · 고용 · 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원

업종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500억원	1,000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중견기업	4,500억원	3,000억원	2,400억원	1,800억원	1,200억원
R&D 비용	7,500억원	5,000억원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조특령)**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3.)에서 발표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 → 5년)

▪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 → 5년)

\*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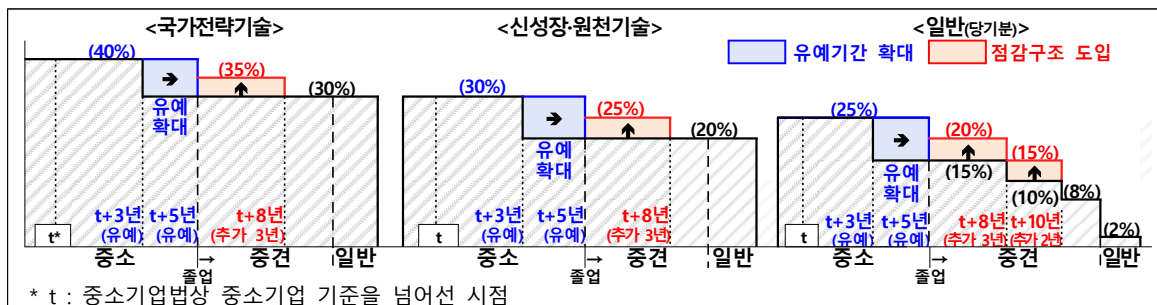
□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3.)에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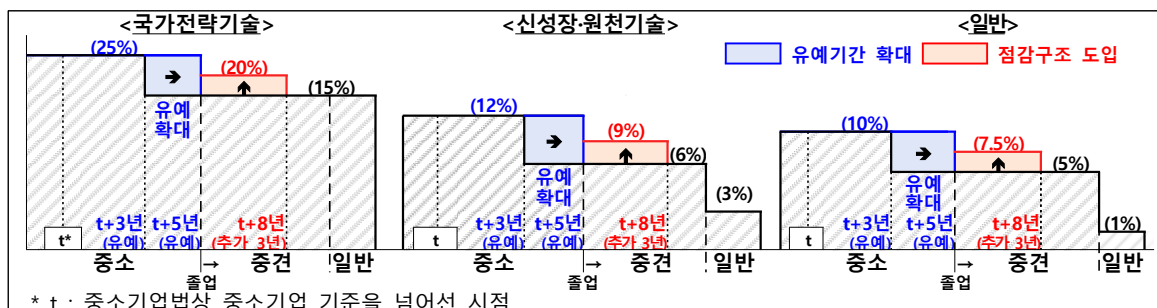
○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

\* 중소-일반기업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기업 성장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 적용

< R&D 세액공제 제도 개정안 >



<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



##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①, ②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③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1.)에서 발표

①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현행)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인정  
(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 적용)

② (기타 비용)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 (현행) 인건비 외 시설임차료 등 비용은 일반 R&D 공제율 적용

▪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개정안) 목적 제한 폐지

③ (인력개발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 공제 적용

##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강화(법인칙)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 추진

①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상시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등 제외 근로자	→	계속고용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1년↑), 단시간(주 15시간↑) 등			
- 제외	기간제(1년↓), 초단시간(주 15시간↓)	→	탄력고용	기간제(1개월↑), 단시간(전체) 등 계속고용 이외의 고용(일용직 제외)

- (계속고용)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 (탄력고용)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 현행 >

① 기본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② 추가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복귀자(1년 지원)				

< 개정안 >

■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 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 고용	임금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10%	-
	임금증가율 20% 초과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 ②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

- (사후관리 폐지) 고용유지 의무와 추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 유인 제공
  - \* (현행)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추정 → (개정안)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 (고용인원 계산\*)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
  - \* (현행)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최소 고용증가 기준)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중견·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 설정(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령)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24.6.27.)에서 발표

\*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채굴권·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현행)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 → (개정안)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 포함,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 보유지분 제외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7년 100% + 3년 50% 감면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 3년 100% + 2년 50% 감면

\*\* 완전 복귀: 100%, 부분 복귀: 50% 감면

###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①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② 민생토론회(‘24.1.10.)에서 발표

-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2) 기업 경쟁력 제고

###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령)

※ 「역동경제 로드맵」(‘24.7.3.)에서 발표

○ ①밸류업·②스케일업·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 상향)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300/400/600억원 → 600/800/1,200억원

-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구분	세부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① 밸류업 우수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② 스케일업 우수기업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 「역동경제 로드맵」(‘24.7.3.)에서 발표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다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실계(조특법·령)**

\*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sum(\text{개별선박의 순톤수} \times \text{톤당 1운항일 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times \text{사용률})$ 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29.12.31.)

○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

개별선박 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단위: 원)		
	현행	개정안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분	14	(좌 등)	18.2
1,000~10,000톤	11		14.3
10,000~25,000톤	7		9.1
25,000톤 초과분	4		5.2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소법)**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 신설

\* LPG 부탄(275원/kg)과 LPG 프로판(14원/kg) 간 세액의 차액(261원/kg) 환급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 이연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비과세)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  
(과세이연)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령)**

\*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부여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3) 자본시장 활성화

####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조특법)

※ 「역동경제 로드맵」(‘24.7.3.)에서 발표

○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②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frac{\text{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text{소득금액 비율}} = \frac{\text{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times 10\%}{\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고 45% → 25%

▪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 민생토론회('24.1.17.)에서 발표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민생토론회('24.1.17.)에서 발표

-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ISA의 ①납입 한도 및 ②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③국내 투자형 신설

① (납입 한도 확대)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② (비과세 한도 확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③ (국내 투자형 신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로 투자 대상을 한정

▪ (납입 한도)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1천만원(서민형 2천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 (가입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현행	개정안		
			일반투자형 ISA	국내투자형 ISA(신설)	
납입한도		연2천만원(총1억원)	연4천만원(총2억원)		
세 제 혜 택	일반 투자자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가입제한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적용)	

###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법)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

###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 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그 배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상장리츠와 유사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평가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중

###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한도 2억원)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까지 매입분)

###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법)

○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

\* (현 행) 국내 비상장주식·해외주식·외국펀드 거래·평가이익 등을 펀드이익에 포함 → (개정안) 국외 주가지수(예: 나스닥100)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ETN,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이익도 펀드이익에 포함

## 2

## 민생경제 회복

- ◇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4.7.3.)에서 발표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총부령)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민생토론회('24.3.5.)에서 발표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민생토론회('24.3.5.)에서 발표

-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 (현행) ~10만원 100/110, 10~500만원 15% → (개정안) ~10만원 100/110, 10~2,000만원 15%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4.4.4.)에서 발표

-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민생토론회('24.3.5.)에서 발표

\* (대상)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기업)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 인하(15→10%)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 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

-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1.)에서 발표

\* (기업) 통합고용 공제액(중소/중견/대, 만원): (기본)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3년간 70% 감면

○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 폐지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친환경차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조정(100→70만원)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법인령)**

\* (법인)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  
(거주자) 양도소득세 10% 감면

○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총부령)**

○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주택은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

###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24.7.3.)에서 발표

\* 공제 납입액(분기별 300만원)은 사업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24.7.3.)에서 발표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5.12.31.)

####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현 행) 건설기계(‘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개정안)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②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3.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4.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8.12.31.)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 확대

	현 행	개정안
경감대상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700kl, 증류주 350kl 이하</li> </ul>
경감한도 및 경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주) 200kl 이하 : 50%</li> <li>■ (증류주) 100kl 이하 :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주) 200kl 이하 : 50%</li> <li>■ 200~400kl : 30%</li> <li>■ (증류주) 100kl 이하 : 50%</li> <li>■ 100~200kl : 30%</li> </ul>

**□ 주류 관련 제도 개선(주세령·주류면허령)**

-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 추가\*

\* 현재는 향료·색소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 개정시 세율이 낮은 탁주로 분류

-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 확대(연 2%→4%)

\* 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시 요구되는 창고면적 완화(66㎡→22㎡)

### 3

## 조세체계 합리화

- ◇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 구축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b>2억원 이하</b>	<b>10%</b>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b>10억원 초과</b>	<b>40%</b>
30억원 초과	50%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현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 교육비의 15%, 의료비의 15%(미숙아 20%, 난임시술비 30%),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등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 조정\*

\* (현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frac{\text{성실사업자} 20\%}{\text{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  이상 과소신고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3년 연장(~27.12.31.)

\*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

## 2) 비과세 · 감면 정비

###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7년 이후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1.3→0.65%, ’27년 이후 1.0→0.5%)

###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 전자신고율(’22년): 종합소득세 (99.5%), 부가가치세 (97.1%), 법인세 (99.6%)

-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
  - (세무대리인) 300만원 → 200만원 / ▪ (세무법인) 750만원 → 500만원

###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① 소득세액의 5%를 공제(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② 조합에 교부금 지급(납부세액의 2~10%)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 → 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 → 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 \*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
  - \*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특법·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24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총 29건)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제도를 적용 종료(총 7건)

〈 '24년 적용 종료 조세특례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 3)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적용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 가능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 인상(공급가액의 1→2%)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 일괄 적용(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시 정산 가능)
-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안) 계약기간 상관없이 2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 (현행)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령, 법인법·령, 관세법·령)**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 추가
-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과세자료(현 69개 자료)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27년 교환 예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관련 가입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교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 지정

- 소득과약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납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

\* (현행)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 (개정안) ①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②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등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 (현행)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 관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 신설

\*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관세법, FTA관세법)**

- 관세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40% → 60%)

\* (관세법)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문서 작성·수취, 자료 파기, 거래 조작·은폐 등 (FTA관세법)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파기 등

## 4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납세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법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예: 연 3억원)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관세법·령)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6년 시행)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 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
  -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거래정보 제공)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전까지 제공
  - \*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 (통관효율화)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 적용
  - \* (현 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택송품) X-ray 검사 → (개정안)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

####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교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령, 법인법·령)

- 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
- \* 원천징수 의무면제 대상: (현행) 국외공모펀드 → (개정안) 국외공모·사모펀드

### □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국기법)

- 국세 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총당하는 금액의 기준 상향(10만원 → 20만원)

###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FTA관세법·령)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

\* FTA 특혜관세 요건 충족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

###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 (현행) 수입신고 수리 후 1년내 가능 +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며 납부고지 시 가능

## 2) 납세자 권익 보호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국조법·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①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과소·미신고> (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  
<거짓·미소명> (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중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정령)**

-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의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자를 추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

## 참 고

## '24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 · 재설계 · 연장 현황

◇ 29개(일몰 25건+부분일몰\* 4건) 항목 중 종료 7개, 재설계 8개, 적용기한 연장 14개

\* 제도 중 일부 내용에 일몰 설정(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4년말 일몰)

□ (정비원칙)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 (정비대상)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7건 일몰 종료 추진

\*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일몰도래 총 건수): '22년 9건(74건), '23년 6건(71건)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7)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 및 제조업 등과의 형평성 제고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활용 실적 저조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정비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가입 현황 등 고려시 지원 필요성 낮음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대회 종료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제도 도입 당시 '24년 한시 적용 취지
재 설 계 (8)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우대)	창업지원 지속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업 성장 지원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투자 지원 제도 합리화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도 합리화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기업 성장 지원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요건 완화 등을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지원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연 장 (1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벤처 활성화 지원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벤처 활성화 지원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 활성화 지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 초기 활성화 지원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서민금융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지원
	• 수소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IV.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1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43,515억원

- (증가요인)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
- (감소요인)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

#### <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이후
합 계	△43,515	△6,227	△38,833	△3,888	8,756	△3,323
소득세	△4,557	408	△6,735	△2,080	4,523	△673
법인세	△3,678	14,236	△18,641	△2,806	6,183	△2,650
부가가치세	3,656	2,597	1,059	-	-	-
상속증여세	△40,565	△24,199	△16,366	-	-	-
기 타	1,629	731	1,850	998	△1,950	-

###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 <sup>1)</sup>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 타 <sup>2)</sup>	합 계
△6,282	△1,664	△2,392	△917	△32,260	△43,515

1)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 (총급여 8,400만원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V. 세법개정 추진일정

### 1 개정대상 법률 : 총 15개

#### 내국세(12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세(3개)

-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2 추진일정

- 7월 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6일(금) ~ 8월 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7일(화) : 국무회의
- 9월 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2

이 자료는 2024년 7월 25일(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기 획 재 정 부



# 목 차

## I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	2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	3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4
①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	4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	5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6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6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7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8
①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	8
②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	9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	10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11
①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	11
②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	12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령) ……………	13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4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15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15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16

###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17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	17
②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	19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	20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령) .....	21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소법·령) .....	22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23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4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령) .....	25

###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26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26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	27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	28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29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	29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	30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31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	31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소득법) .....	32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	33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4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	35

## II.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36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37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증부령) .....	38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39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40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41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42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	43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44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45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	46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	47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48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49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법인령) .....	50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	51

###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52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3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령) .....	54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55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6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	57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58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	58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	59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	60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	61

## Ⅲ.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62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	62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	63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등) .....	64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	65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66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	67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68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	69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70
(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	70

##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령) .....	71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령) .....	72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73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74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75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령) .....	75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령) .....	76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	77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	78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79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	80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	80
②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	80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	81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	82
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	82

##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령) .....	83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	84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령·칙) .....	85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	86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	87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	88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89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령·칙) .....	90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	91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소득법·법인법) .....	91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	92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관세법·령) .....	93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	94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95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	96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	97
(1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98
(15)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	99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관세법·FTA관세법) .....	100

##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법인법) .....	101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102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관세법·령) .....	102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령) .....	103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령) .....	104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	105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법인법 등) .....	105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	106
(4)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국기법) .....	107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108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령) .....	108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	109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	110

###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111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	111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	112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113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114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115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	116

## V.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	117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령) .....	117
②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령) .....	118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	119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	120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	121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법·령) .....	121
②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조특법) ...	122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조특법) .....	123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	124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령) .....	125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	126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	127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령) ...	128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9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	130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1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조특법) .....	132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조특법) .....	133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4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5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	136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령) .....	137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령) .....	138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9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	140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	140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141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	142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	143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	144

###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	145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령) ....	146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령) .....	147

###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법인법 등) .....	148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	149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	150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151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	151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	152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	152
④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	153
⑤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	153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	154
⑦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	155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	156
⑨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	157
⑩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	158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	159
⑫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국조법) .....	160
⑬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	161
⑭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	162

##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	163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	164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	165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	166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령) .....	167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	168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	168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	169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	169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	170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	170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	171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	172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령) .....	173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	174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	174
(17) 관세사의 검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관세사법) .....	175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	176

##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령) .....	177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	178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	179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 .....	180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 .....	180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 .....	181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	182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	183
--------------------------	-----

# I.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④, §24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R&D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amp;D비용</li> <li>○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신성장·원천기술</th> <th style="text-align: center;">국가전략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견기업</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20~3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0~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기업</td> </tr> </tbody> </table> </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7.12.31.</li> </ul>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li> <li>○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기본</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추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견</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전략기술</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body> </table> </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공제율(%)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4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7.12.31.</li> </ul>
공제율(%)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4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 (좌 동) ○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구 분(%)	기 본			추 가*	구 분(%)	기 본			추 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p> <p>○ (제외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성서비스업</li> <li>-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규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amp;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p> <p>○ (독립성) 아래 ①, ② 모두 충족</p> <p>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p> <p>②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p>	<p><input type="checkbox"/> 제외업종 추가, 규모기준 조정</p> <p>○ 업종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부동산임대업</li> </ul> <p>○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의 3배(R&amp;D세액공제의 경우 5배) 미만일 것</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금액 (억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업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d>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운수창고, 정보통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td> </tr> </tbody> </table> <p>○ (좌 동)</p>	기준금액 (억원)	업종	1,500	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기준금액 (억원)	업종												
1,500	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①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졸업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li> <li>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li> <li>③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li> </ul> </li> <li>○ (유예기간) 졸업 후 3년</li> </ul>	<input type="checkbox"/> 졸업 유예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li> </ul>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의2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input type="radio"/>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확대  <input type="radio"/>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  
부터 적용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용  ○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좌 동)  ○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 <sup>1)</sup>	구 분(%)	기본			추가 <sup>1)</sup>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15 <sup>2)</sup>	25	-	일 반	2	8~20 <sup>2)</sup>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30	최대 10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sup>3)</sup>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sup>4)</sup>	40	최대 1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25%, 추가 최대 15%					1) (좌 동)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좌 동)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 <sup>1)</sup>	구 분(%)	기본			추가 <sup>1)</sup>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일 반	1	5, 7.5 <sup>2)</sup>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3	6, 9 <sup>3)</sup>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국가전략기술	15	15, 20 <sup>4)</sup>	25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좌 동)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 별표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R&amp;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p> <p>○ 일반 분야: ❶ ~ 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❶ ~ ❸</p> <p>❶ 위탁·공동 연구개발비</p> <p>❷ 재료비</p> <p>❸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amp;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amp;D 공제율 적용</p> <p>❹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단,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p> <p>❺ R&amp;D용 시설 임차료</p> <p>❻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p> <p>❼ 디자인 개발지도비</p> <p>❽ 특허 조사·분석비</p>	<p><input type="checkbox"/> 적용범위 확대</p> <p>○ 일반 분야: (좌 동)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❶ ~ ❸</p> <p>○ (좌 동)</p> <p>❸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amp;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p> <p>❹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 (좌 동)</p>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인력개발비 세액공제</p>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li> <li>-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li> <li>-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li> <li>-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li> <li>-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 운영비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공제율) 대 기 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p>	<p><input type="checkbox"/> 적용범위 확대</p> <p>○ (좌 동)</p> <p>-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p> <p>*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p> <p>○ (좌 동)</p>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용자산의 내용연수 ○ 5년 - 건물부속설비 - 구축물 - 기계장치 ○ 3년 - 광학기기 - 시험기기 - 측정기기 - 공구 -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추 가>	<input type="checkbox"/>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 (좌 동) <삭 제> ○ (좌 동) - 기계장치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①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고용세액공제  ○ (대상) 상시근로자 -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주 15시간↓) 제외  ○ (기본공제)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 고용지원 대상 확대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 rowspan="2">중견(3년)</th> <th rowspan="2">대(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rowspan="3"></th> <th colspan="4">공제규모(단위:만원, %)</th> </tr> <tr> <th colspan="2">중소</th> <th rowspan="2">중견</th> <th rowspan="2">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계속고용</td> <td>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td> <td>2,200</td> <td>2,400</td> <td>1,200</td> <td>400</td> </tr> <tr> <td>그 외 계속고용</td> <td>1,300</td> <td>1,500</td> <td>700</td> <td>-</td> </tr> <tr> <td rowspan="2">탄력고용</td> <td>인건비증가율 3% ~ 20%</td> <td colspan="2">증가분의 20%</td> <td>증가분의 10%</td> <td rowspan="2">-</td> </tr> <tr> <td>인건비증가율 20% 이상</td> <td colspan="2">20% 초과 증가분의 40%</td> <td>20% 초과 증가분의 20%</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고용	인건비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	인건비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고용	인건비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																																																				
	인건비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②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 29의8)

현 행	개 정 안									
<p>□ 통합고용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li> <li>-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li> <li>*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li> <li>○ (추가공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중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9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휴복귀자(1년 지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4.12.31. 육휴복귀자 '25.12.31.</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휴복귀자(1년 지원)	<p>□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 (사후관리 폐지)</li> <li>* 계속고용인원이 유지·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li> <li>**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내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li> <li>○ 기본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시 종료)</li> <li>*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li> <li>○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li> </ul>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휴복귀자(1년 지원)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104의15, 조특령 §104의1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p> <p>○ (대상)</p> <p>①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p> <p>② 광업권·조광권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 투자</p> <p>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①, ② 투자</p> <p>-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법인</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 (공제율) 투자·출자액의 3%</p>	<p><input type="checkbox"/>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 요건 완화</p> <p>○ (좌 동)</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li> <li>▪ 지분을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li> </ul> <p>○ (좌 동)</p>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p> <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p> <p>○ (대상)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p> <p>①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완전복귀) 또는 축소·유지(부분복귀)</p> <p>②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p> <p>○ (감면율)</p> <p>- (소득·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p> <p>*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p> <p>-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p> <p>* 「해외진출기업복귀법」 §7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p> <p>○ (적용기한) '24.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27.12.31.</p>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p> <p>○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p> <p><b>① (소재지) 인구감소지역</b>(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 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p> <p>-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p> <p><b>②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b></p> <p>*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p> <p><b>③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b></p> <p>○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p>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p> <p>①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p> <p>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p> <p>③ 전용면적 85m<sup>2</sup>, 취득가액 6억원 이하</p> <p>○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p>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

## 기업경쟁력 제고

### (1)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 (상증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p> <p>○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p> <p style="text-align: center;"><b>&lt;단서 신설&gt;</b></p>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업영위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20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30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억원</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p><input type="checkbox"/>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 우대</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매출액 제한 폐지</p>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업영위기간</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일반</th> <th style="text-align: center;">밸류업 및 스케일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20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b>600억원</b></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b>한도없음</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30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b>800억원</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b>1,200억원</b></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p> <p>※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p> <p><b>【밸류업】</b>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p> <p><b>① 5년간('25~'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b></p> <p><b>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b></p>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10~20년	300억원	<b>600억원</b>	<b>한도없음</b>	20~30년	400억원	<b>800억원</b>	30년 이상	600억원	<b>1,200억원</b>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10~20년	300억원	<b>600억원</b>	<b>한도없음</b>																							
20~30년	400억원	<b>800억원</b>																								
30년 이상	600억원	<b>1,200억원</b>																								

**【스케일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sup>(a)</sup>비중 및 <sup>(b)</sup>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 <sup>(a)</sup>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sup>(b)</sup>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
- <sup>(a)</sup>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sup>(b)</sup>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 ②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 특구에 소재
- ②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증령 §15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 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 ○ 비사업용 토지 등 ○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 대여금 <단서 신설> ○ 과다보유 현금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input type="checkbox"/>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제외 ○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b>20% 가산</b>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 (예외) ①~⑥은 할증평가 제외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②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는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input type="checkbox"/> 폐지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①·⑧, 조특령 §104의7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도 ○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sum(\text{개별선박의 순톤수} \times \text{톤당 1운항일 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times \text{사용률})$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input type="checkbox"/>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 (좌 동)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적용기한) '24.12.31.		※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 '29.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LPG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용 부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li> </ul> </li> </ul> <p>* 275(부탄) - 14(프로판) = 261원/kg</p>	<input type="checkbox"/> 환급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수소제조용 부탄</li> </ul> </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6의9, 조특령 §43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p> <p>*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p> <p>○ (적용요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p> <p>*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 &amp; 상무 등기이사 &amp;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p> <p>○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p> <p>-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 금액 과세</p> <p>*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p> <p>○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p> <p>*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p>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b>①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16의2)</b>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 매수가액) <b>연간 2억원 한도*</b>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b>②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16의3)</b>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 (§16의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b>5년간 분할납부</b> <b>③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16의4)</b> * 3년간 행사금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b>양도시 양도소득</b> (양도가액 - 행사금액)으로 납부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input type="checkbox"/>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p> <p>① (교부) 분할대가 전액(분할 합병의 경우 80% 이상)을 분할 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p> <p>②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③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 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p>	<p><input type="checkbox"/>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p> <p>○ (좌 동)</p> <p>-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p> <p>○ (좌 동)</p>

**<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3

## 자본시장 활성화

###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33, 조특령 §100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예: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li> </ul> </li> <li>○ (요건) ①, ②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li> <li>- ②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li> </ul> </li> </ul> <p>*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li> <li>- (공제율) 5%</li> <li>-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li> </ul> </li> <li>○ (적용기한) '27.12.31.</li> </ul>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34, 조특령 §100의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p> <p>○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p> <p>*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①, ② 모두 충족) -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②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p> <p>○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p> <p>-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p> <p style="text-align: center;">* <math>\frac{\text{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text{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times 10\%}{\text{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math></p> <p>-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p> <p>○ (적용기한) '28.12.31.</p>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p> <p>*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p> <p>○ (시행일) '25.1.1.</p>	<p><input type="checkbox"/> 폐 지*</p> <p>*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p>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li> <li>*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li> <li>○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li> <li>○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li> <li>○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li> <li>*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li> </ul>	<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억원(연 4천만원)</li> <li>○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원)</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국내투자형 ISA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li> <li>○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li> <li>○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li> </ul> </li> <li>○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li> <li>○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li> <li>-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li> </ul> </li> </ul>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17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div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div>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 (좌 동)  ○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②, 소득법 §4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li> <li>-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li> </ul>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li> </ul>
<input type="checkbox"/>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li> <li>○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li> <li>②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li> <li>③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한정)</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③ 적격집합투자기구</li> <li>④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li> </ul>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73(2), §86의3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li> <li>○ 유가증권 평가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li> <li>-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li> </ul> <p>*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p>

**<개정이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2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세율) 14%</li> </ul> </li> <li>○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li> <li>○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7.12.31.까지 매입분</li> </ul>

〈개정이유〉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26의2④)

현 행	개 정 안
<p>□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li> <li>○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li> </ul> <p>-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채권등</li> <li>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③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li> <li>④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li> </ul>

<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 Ⅱ.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결혼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li><li>○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li><li>○ (공제금액) 50만원</li><li>○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li></ul>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p> <p>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p> <p>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p>	<p><input type="checkbox"/>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p> <p>① (좌 동)</p> <p>② 5년 → 10년</p>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한도)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20만원)는 현행 유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폐지  ○ ①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②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③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59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li> <li>○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15만원</li> <li>- (둘째) 20만원</li> <li>- (셋째 이후) 30만원/인</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만원</li> <li>- 30만원</li> <li>- 40만원/인</li> </ul> </li> </ul>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의2②)

현행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천만원 이하) 300만원</li> <li>▪ (7천만원 초과) 250만원</li> </ul> </li> <li>○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항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r> <td>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td> <td>3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천만원 이하) 300만원</li> <li>▪ (7천만원 초과) 200만원</li> </ul>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p><input type="checkbox"/>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추가공제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항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r> <td>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td> <td rowspan="2">30%</td> </tr> <tr> <td>-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li> <li>○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li> <li>-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li> </ul> </li> <li>*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li> <li>○ (기부·공제한도) 500만원</li> </ul>	<input type="checkbox"/>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500만원 → 2,000만원</li> </ul>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기준금액 미만 지급)		<input type="checkbox"/>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b>가구 유형</b>	<b>총소득 기준</b>	<b>가구 유형</b>	<b>총소득 기준</b>
단독가구	2,2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b>맞벌이가구</b>	<b>3,800만원</b>	<b>맞벌이가구</b>	<b>4,400만원</b>
<input type="checkbox"/> 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input type="checkbox"/>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b>총급여액 등</b>	<b>근로장려금</b>	<b>총급여액 등</b>	<b>근로장려금</b>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b>3천800만원 미만</b>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1천700만원 이상 <b>4천400만원 미만</b>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91의22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li> </ul> </li> <li>○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li> <li>○ (납입한도) 연 840만원</li> <li>○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li> <li>○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li> <li>*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추징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5년 → 3년</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p> <p>*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p> <p>**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p> <p>①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15% 공제</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p>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p>*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li> <li>-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li> <li>- 15% → 10%</li> <li>- '27.12.31.</li> <li>○ 적용기한 연장</li> <li>- (좌 동)</li> <li>- '27.12.31.</li> </ul>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li> <li>○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li> <li>○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li> <li>-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li> </ul> </li> <li>○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li> <li>○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li> <li>○ 5년 이상 → 3년 이상</li> <li>○ (좌 동)</li> <li>○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li> </ul>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b>① (성별) 여성</b> <b>②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b>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b>③ (퇴직사유)</b> -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교육 - 육아(8세 이하 자녀) <단서 신설> <추 가> <b>④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b>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삭 제> <b>② 1년 이상 근무</b>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b>③ 퇴직사유 추가</b> - (좌 동) ▪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b>④ (좌 동)</b>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채용·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li> <li>○ (감면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li> <li>- 전기차: 대당 300만원</li> <li>-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li> </ul> </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p><input type="checkbox"/>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원 → 70만원</li> </ul> </li> <li>○ (좌 동)</li> <li>○ '26.12.31.</li> </ul>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55의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❶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❷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❸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❹ '24.12.31.까지 체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❹ '26.12.31.까지 체결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비사업용 토지: 10%) 적용 제외</li> <li>② (거주자)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li> </ul> </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7.12.31.</li> </ul>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li> <li>○ 학생·종업원 기숙사</li> <li>○ 어린이집용, 노인복지용 주택</li> <li>○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li> </ul>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3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좌 동)	
○ (공제적용 소득) ❶ 또는 ❷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❶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❶ (좌 동)	
❷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❷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한도 상향	
<b>사업(근로)소득금액</b>	<b>공제한도</b>	<b>사업(근로)소득금액</b>	<b>공제한도</b>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li> <li>○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li> <li>○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5.12.31.</li> </ul>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li> <li>-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li> </ul> </li> <li>○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①×② - 1,000만원)을 3년 분할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li> <li>① 기존자산 양도가액 - 기존자산 장부가액</li> <li>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li> <li>(※ 100분의 100 한도)</li> </ul> </li> <li>○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li> </ul>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p> <p>○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p><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확대</p> <p>○ (좌 동)</p> <p>○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p>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li> </ul> </li> <li>②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 금액 15억원 미만</li> <li>③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li> </ul> </li> <li>○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li> </ul> </li> <li>○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li> <li>○ (신청기한) '27.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li> </ul> </li>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 §8③, 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고량) 발효주 500kl 이하, 증류주 250kl 이하</li> </ul> </li> <li>○ (경감을 및 적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주) 200kl 이하: 50% &lt;신 설&gt;</li> <li>- (증류주) 100kl 이하: 50% &lt;신 설&gt;</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주 700kl 이하, 증류주 350kl 이하</li> </ul> </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주) 200kl 이하: 50% 200kl 초과~400kl 이하: 30%</li> <li>- (증류주) 100kl 이하: 50% 100kl 초과~200kl 이하: 30%</li> </ul> </li> </ul>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탁주의 제조원료 <b>①</b> 녹말이 포함된 재료, 곡(누룩), 물 <b>②</b> 당분, 과일·채소류 <b>③</b> 첨가제 - 아스파탐, 당분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탁주 첨가원료 확대 ] (좌 동) ○ 첨가제 범위 확대 - (좌 동) - 향료·색소

<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0)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의 실감량** 인정 한도</p> <p>*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탁·약주 및 전통주 등(국세청 고시)</p> <p>**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p> <p>○ 주류별 기본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 검정수량의 1%</li> <li>- (청주) 검정수량의 5%</li> <li>- (맥주) 검정수량의 3.5%</li> <li>-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2%</li> </ul> <p>○ 나무통 숙성 시 추가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위스키·브랜디</li> <li>- (추가한도) 연 2%</li> </ul>	<p><input type="checkbox"/>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p> <p>○ (좌 동)</p> <p>○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주류</li> <li>- 2% → 4%</li> </ul>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관리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 66m <sup>2</sup> 이상 ○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input type="checkbox"/> 면허요건 완화 ○ (좌 동) ○ 66m <sup>2</sup> 이상 → 22m <sup>2</sup>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종합주류도매업의 진입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p>□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math>\pm 0.5</math>도 증감 허용</li> <li>○ (예외) +0.5도 추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살균 탁주·약주</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li> </ul> </li> </ul> <p>*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p>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Ⅲ.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속세 공제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 2억원</li> <li>○ 그 밖의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li> <li>-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li> <li>-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li> <li>-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li> </ul> </li> <li>○ 일괄공제: 5억원</li> </ul> <p>*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p>	<p><input type="checkbox"/> 공제 규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자녀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5천만원</li> <li>→ 1인당 5억원</li> </ul> </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중산층 · 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li> <li>○ (소득구분) 기타소득</li> <li>○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li> <li>○ (신고·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li> <li>○ (시행시기) '25.1.1.</li> </ul>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1.1.</li> </ul>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37⑥, 소득령 §8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input type="checkbox"/>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input type="checkbox"/> (좌 동)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p> <p>○ (원칙) ①, ② 중 선택</p> <p>①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p> <p>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input type="checkbox"/>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p> <p>○ (좌 동)</p> <p>-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연결법인*은 ②방식 적용</p> <p>*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p>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을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b>과세표준</b>	<b>세율</b>	<b>과세표준</b>	<b>세율</b>
2억원 이하	9%	<b>200억원 이하</b>	<b>19%</b>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li> <li>○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li> </ul> <p>*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물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li> </ul> <p><input type="checkbox"/>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li> <li>○ (비과세대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li> <li>②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li> </ul> <p>*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p> <li>③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li> </li></ul>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의3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대상) ①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②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 (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input type="checkbox"/> 추징기준 합리화 ○ (좌 동) ○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소득)	
<b>성실사업자·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b>	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b>성실사업자</b>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b>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b>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 (소득금액)과 일원화	

〈개정이유〉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5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li> <li>-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li> <li>○ (손금불산입액) 순이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소득금액*의 30%</li> </ul> </li> <li>*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li> </ul>	<input type="checkbox"/>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통·에너지·환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 ~'24.12.31.</li> <li>※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25.1.1. 시행 예정</li> </ul>	<input type="checkbox"/> 유효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12.31.</li> <li>※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28.1.1. 시행)</li> </ul>

〈개정이유〉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2 비과세·감면 정비

###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li> </ul> </li> <li>○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li>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27년 이후 1.0%)</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추가&gt;</p> </li> <li>○ (연간 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공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li> </ul> </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세액공제 ○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 종합소득세, 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양도소득세: 2만원 ○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 (좌 동) ○ 공제대상 세목 축소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삭 제&gt;</p> </div> - (좌 동) ○ 300만원 → 200만원 750만원 → 500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

**<적용시기>** (공제액) '25.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 · §169, 소득령 §221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p> <p>*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 <p>○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p> <p>*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p> <p>○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p> <p>*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p> <p>○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p> <p>*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4.12.31.</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p> <p>○ (좌 동)</p> <p>○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p> <p>○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li> <li>○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li> </ul> <p>-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p> <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p>	<p><input type="checkbox"/> 감면을 정비 등 제도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①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li> <li>○ ②수도권 감면율 축소</li> <li>○ ③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li> </ul> <p>- 적용기한 종료</p> <p>- 수도권 밖*:</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좌 동)</div> <p>*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 → 25% (청년 등) 5년간 100% → 75%</li> <li>-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기본 감면</th> <th rowspan="2">추가 감면</th> </tr> <tr> <th>수도권과밀억제권역</th> <th>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 </tr> </thead> <tbody> <tr> <td>창업중소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시근로자 증가율 × 50%</td> </tr> <tr> <td>청년·생계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100%</td> </tr> <tr> <td>벤처기업 등</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24.12.31.</li> </ul>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기본 감면</th> <th rowspan="2">추가 감면</th> </tr> <tr> <th>수도권과밀억제권역</th> <th col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 </tr> <tr> <td></td> <td></td> <th>수도권</th> <th>수도권 밖*</th> <td></td> </tr> </thead> <tbody> <tr> <td>창업중소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red;">5년 25%</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5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td> </tr> <tr> <td>청년·생계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red;">5년 75%</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100%</td> </tr> <tr> <td>벤처기업 등</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5년 50%</td> </tr> </tbody> </table> <p>*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한도) 연간 5억원</li> <li>○ '27.12.31.</li> </ul>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 조특령 §60)**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p> <p>○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p> <p>○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li> <li>*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li> <li>-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li> <li>-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li> <li>*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li> <li>-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li> </ul>	<p><input type="checkbox"/>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p> <p>○ (좌 동)</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 + 2년 50%</li> <li>*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 63, § 63의2, 조특령 § 60, § 60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p> <p>○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p> <p style="margin-left: 20px;">*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p> <p>○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이전지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낙후지역</td> <td>10년 100% +2년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td> <td>7년 100% +3년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td> <td>5년 100% + 2년 5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p>	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10년 100% +2년 50%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	7년 100% +3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	5년 100% + 2년 50%	<p><input type="checkbox"/>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p> <p>○ (좌 동)</p> <p style="margin-left: 20px;">- 다만,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p> <p>○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p> <p>○ (좌 동)</p>
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10년 100% +2년 50%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	7년 100% +3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	5년 100% + 2년 50%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 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p> <p>○ (규모)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p> <p>*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p> <p>○ (독립성) ①~③ 모두 충족</p> <p>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p> <p>②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p> <p>③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p> <p>○ (제외대상)</p> <p>- 소비성서비스업</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p> <p>○ (좌 동)</p> <p>- 부동산 임대업</p> <p>-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p> <p>*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p> <p>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p> <p>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p> <p>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p>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14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li> </ul> </li> <li>○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li> <li>❶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건축물, 차량 등 제외)</li> <li>❷ ❶의 제외자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li> <li>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li> </ul> </li> </ul> </li> <li>○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p>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65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input type="checkbox"/>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금액의 20% <input type="checkbox"/> (한도) 건당 50만원 이하 인당 연 2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지급액 한도 하향 조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한 내국법인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②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가속상각 허용)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의1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li> </ul> </li> <li>○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li> <li>- (최소 투자기간) 1년</li> </ul> </li> <li>○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  
(조특법 §106②·§11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 ·지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의4⑧)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0%
<b>3천만원 초과분 (‘24.1.1.~’24.12.31.)</b>	<b>40%</b>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 3

## 세원투명성 제고

###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li> <li>○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li> <li>○ (납부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li> <li>②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li> <li>③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li> <li>④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li> </ol> </li> <li>○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연입금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10%를 부과</li> <li>**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 22/100,000</li> </ul> </li> </ul>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 47①·63④, 소득법 § 56의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li> <li>○ (적용대상) ❶ 또는 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li> <li>❷ 신규 사업자(개인)</li> </ul> </li> <li>○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7.12.31.</li> </ul>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 <b>현행 납세신고 제도</b></p> <p>① (대상자) 모든 납세자                      ②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③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④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p>	<p><input type="checkbox"/> <b>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 납세신고 도입</b></p> <p>○ <b>(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b></p> <p style="margin-left: 20px;">*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amp;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p> <p>○ <b>(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b></p> <p style="margin-left: 20px;">*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p> <p>○ <b>(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b></p> <p style="margin-left: 20px;">*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p> <p>○ <b>(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b></p> <p>○ <b>(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 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b></p>

**<개정이유>** 성실신고 및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

**<적용시기>** '2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❶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li> <li>❷ (위장)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li> <li>❸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li> </ul> </li> <li>-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ul> </li> <li>○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li> </ul>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 사업자 미등록: 1%* * 간이과세자: 0.5%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b>0.5%</b> ○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3%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2%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input type="checkbox"/>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 (좌 동) ○ <b>1% → 2%*</b> * 간이과세자: 0.5%→1%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12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정의  ○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신 설>	<input type="checkbox"/>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 (좌 동)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input type="checkbox"/>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 (좌 동)  ○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 출장, 연수 등 직업·사업과 관련된 사유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input type="checkbox"/> 과세기간  ○ (원칙) 1월1일 ~ 12월31일  ○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시) 1월1일~출국*일 *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  <신 설>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 및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 (좌 동)  ○ 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시)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추 가>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 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좌 동)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법 §164의4 · §177, 법인법 §120의4 · §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제출기관</p> <p>*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p> <p>○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p> <p>○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제출기관 추가</p> <p>○ (좌 동)</p> <p>○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p> <p><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추가</p> <p>○ (좌 동)</p> <p>○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p>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제출기관) '25.1.1. 이후부터 적용

(제출자료)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37·§3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p> <p>*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p> <p>○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p> <p>*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암호화자산* 정보</p> <p>*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암호화자산사업자</p> <p>○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p> <p style="text-align: center;">-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p>

<개정이유>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교환 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①·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제조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li> </ul> </li> <li>○ (특례) 판매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li> <li>-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과세 방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과세한 경우 이중과세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자등</li> <li>- 판매자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부과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유 반입자·양수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면세유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추징대상</p>

<개정이유> 유류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상속인(수유자 포함)</li> <li>○ (승계 범위) 상속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li> <li>①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li> <li>②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li> </ul> </li> </ul> <p style="font-size: small;">*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p>

〈개정이유〉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3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b>①</b>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b>②</b> 과점주주 - (요건) 주주등(대상)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을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대상) ▪ 주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범위 확대  ○ (좌 동)  ▪ 영농·영어조합 법인의 조합원

<개정이유> 납세의무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21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 원칙 5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 (좌 동)  ○ 수입 무신고 시 7년

<개정이유> 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 42, FTA관세법 § 3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①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상향 ○ (좌 동) - 부족세액의 40 → 60% ○ (좌 동) - 해당 관세액의 40 → 60%
<input type="checkbox"/> FTA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①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②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 기타 부정한 행위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상향 ○ (좌 동) ○ 부족세액의 40 → 60%

**<개정이유>** 성실신고 유도 등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과소신고)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무신고)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input type="checkbox"/>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 254①·⑥, 관세령 § 258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 (방법)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input type="checkbox"/>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 ○ 전자상거래물품은 탁송품·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input type="checkbox"/> 우선 적용 범위 확대 ○ 수출입신고 →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  
(관세법 §254②·⑦ 및 §222, 관세령 §258②·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영업등록 의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li> <li>○ 구매대행업자*</li> </ul> <p>*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p>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외 통신판매업자</li> <li>②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li> <li>③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li> </ul> </li> <li>○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li> <li>○ (유효기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li> <li>-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li> <li>-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구매대행업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삭 제>
	※ 구매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를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  
(관세법 §254③, 관세령 §258④·⑥)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거래정보 요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 금액, 물품수신인 정보 등</li> <li>○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li> <li>○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li> </ul>	<p><input type="checkbox"/>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관세청(세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li> <li>*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li> <li>○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li> </ul>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현 행	개 정 안
<p>□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li> <li>○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li> <li>○ (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li> </ul> <p><b>①</b>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p> <p><b>②</b> (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ii)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li> <li>-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li> </ul> <p>※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p>	<p>□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 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li> </ul> <p>-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①&amp;② 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li> </ul> <p>※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p>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소득령 §179의4⑦·⑧, 법인령 §132의4⑦·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li> <li>-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li> <li>-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li> <li>-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li> </ul>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환급금의 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총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간 미수령한 경우</li> <li>○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총당</li> <li>○ (요건) 10만원 이하</li> </ul>	<input type="checkbox"/> 금액요건 상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만원 이하</li> </ul>

〈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총당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input type="checkbox"/> 내용 변경 대상 확대 ○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능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분부터 적용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9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li> <li>○ (예외)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li> </ul> <p style="font-size: small;">*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p>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납세자 권익 보호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li> <li>○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li> <li>-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li> <li>-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183일 이하 → 182일 이하</li> <li>- (좌 동)</li> <li>-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li> <li>-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 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li> </ul> </li> </ul>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미신고·과소신고한 경우: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인하 ○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10~20%(누진율) → 10%(단일율) 20억원 한도 → 10억원 한도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b>2억원</b> +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b>6.5억원</b> + 50억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	○ 과태료율 인하: 20% → 10% ○ (좌 동)
○ 미소명·거짓소명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 ·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감경 가능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의)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li> <li>○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li> <li>○ (청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li> <li>②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청구 대상 확대</li> <li>- (좌 동)</li> <li>③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li> </ul>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p> <p style="margin-left: 20px;">*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p> <p style="margin-left: 20px;">**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p> <p style="margin-left: 20px;">○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p> <p style="margin-left: 20px;">*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p>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p> <p>○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사전통지 기간 조정</p> <p>○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p> <p>○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p>

<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li> <li>○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li> </ul> </li> </ul> <p>* 고용재난지역,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지원 대상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②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당한 개인사업자</li> </ul>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 V.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병시 의제배당(① - ②) <b>①</b>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b>②</b>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input type="checkbox"/>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① - ②)  <b>①</b>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b>②</b>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input type="checkbox"/> 합병대가 명확화  ○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 ○ (좌 동)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②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 §17③, 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li> </ul> </li> <li>○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li> </ul>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li> <li>○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li> </ul>

<개정이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50①(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li> <li>○ (나이요건) 20세 이하</li> </ul>	<input type="checkbox"/> 나이요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li> </ul>

〈개정이유〉 조문 정비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좌 동)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li> <li>○ 국립대학병원</li> <li>○ 서울대학교병원</li> <li>○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li> </ul>
<input type="checkbox"/> 일반기부금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li> <li>○ 어린이집, 유치원</li> <li>○ 의료법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li> </ul>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li> <li>○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li> <li>○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li> </ul> <p>-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p>	<p><input type="checkbox"/>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배당금액*</p> <p>*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p>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76의2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p> <p>○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p> <p>○ (적용방법)</p> <p>-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p> <p>○ (좌 동)</p> <p>○ (적용방법)</p> <p>-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p> <p>-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p>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연구개발 개념·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li> <li>○ 제외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li> <li>-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li> <li>-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li> <li>-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li> <li>- 법률 및 행정 업무</li> <li>-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li> <li>-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li> <li>-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li> <li>- 기존에 상품화·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개념·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li> <li>○ (좌 동)</li> <li>-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li> </ul>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명확화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6③, §7①, §106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업종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input type="checkbox"/> 업종명 현행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li> <li>○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li> <li>○ 도로화물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예: 대형화물차운송 등은 제외)</li> </ul> </li> </ul>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출연금 수령 시 익금 불산입 후 지출 시 익금산입</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법 등*에 따른 출연금</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26.12.31.</li> </ul>	<input type="checkbox"/> 대상 출연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2의4①, 조특령 §11의4④)

현 행	개 정 안
<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시 30%) 인수한 내국법인</li> <li>○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li> <li>▪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 합계</li> <li>▪ (간접법) 양도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li> </ul> </li> <li>○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p>□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기술가치금액의 10%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법으로 계산</li> <li>▪ (좌 동)</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li> <li>○ '27.12.31.</li> </ul>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7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amp;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li> </ul> </li> <li>○ (과세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li> <li>○ (적용기한) '24.12.31.</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7.12.31.</li> </ul>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89의2⑥)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보관기간 및 제공·누설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개별 세금우대저축 해지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li> <li>* 은행연합회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관</li> <li>** 연금계좌 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li> <li>○ (집중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저축자의 서면요구 또는 동의 없이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누설 금지</li> <li>○ (자료제공 제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장의 요구</li> <li>- 「금융실명법」상 조사·감독 등의 경우</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자료요구 주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li> </ul>

<개정이유> 국가 승인통계 작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0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li> <li>○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li> <li>○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li> <li>○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5.12.31.까지 가입분</li> </ul>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100의3⑤(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b>홀벌이 가구*</b> 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만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소득자인 가구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input type="checkbox"/>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b>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b>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 완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100의5②, §100의8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분) 총지급금의 35%</li> <li>○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35%</li> </ul>	<input type="checkbox"/> 하반기 지급금액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li> </ul>
<input type="checkbox"/>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li> <li>○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li> </ul>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 (특례내용)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당 출연 금액 손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 (요건) ①, ② 모두 충족 ①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 (취소사유) 정비구역 해제 등 ② 시공사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 (특례내용) 시공사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127④, ⑫)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li> </ul> </li> <li>○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li> </ul> </li> <li>○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배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li> </ul>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중복배제</p>

<개정이유> 세제혜택 중복 방지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li> <li>○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input type="checkbox"/> 안분계산 예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p> <p>*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p>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p> <p>*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p> <p>○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p> <p>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p> <p>②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p> <p>③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p> <p>○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p>	<p><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p> <p>○ (좌 동)</p> <p>○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p> <p>*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p>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전용면적) 85㎡ 이하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li> <li>○ 추가납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li> <li>- 1주택 고령 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생애누적 최대 1억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부 중 1명 60세 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양도차액</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td> <td>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b>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b>  <b>② 기초연금수급자(부부 중 1명)</b>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납입한도</td> <td>Min(대상부동산 양도차액, 1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납입기간</td> <td>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b>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b> <b>② 기초연금수급자(부부 중 1명)</b>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액,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b>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b> <b>② 기초연금수급자(부부 중 1명)</b>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액,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개정이유>** 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연금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li> <li>○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li> <li>②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li> <li>③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li> </ul> </li> <li>○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li> <li>○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li> <li>○ (적용기한) '27.12.31.</li> </ul>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 5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6억원</li> <li>○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li> <li>○ (직계비속) 5천만원</li> <li>○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li> </ul>	<input type="checkbox"/> 친족 범위 합리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li> </ul>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p> <p>*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p> <p>○ 과세대상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li> <li>- 채무 면제·인수·변제</li> <li>-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증여의제이익의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li> <li>-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li> </ul>	<p><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 범위 추가</p> <p>○ (좌 동)</p> <p>-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p> <p>○ (좌 동)</p>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 혈액	<input type="checkbox"/> 면세 범위 확대 ○ (좌 동) ○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p> <p>*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p> <p>○ (추징금액) ①~③의 합계액</p> <p>①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p> <p>② 이자상당액</p> <p>-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미지급기간(일) × 0.022%</p> <p>③ 가산세</p> <p>-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40%</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p> <p>○ (좌 동)</p> <p>-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p>

<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 (대상) 호텔업	<input type="checkbox"/>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 (좌 동)  ○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적용시기>** '2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 §156의2, 소득령 §216의2, 법인법 §98조4, 법인령 §162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 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 (좌 동)  <삭 제>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p>□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li> <li>○ (청구시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가격 조정신고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개월 이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제출자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정상가격 입증서류*</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 기한 연장 :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li> <li>○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li> </ul> </li> </ul>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li> <li>○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li> <li>○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li> <li>○ (제출·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 가능</li> <li>○ (과태료)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보완 요구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li> </ul> <p>*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 취득가액등의 1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요구기간 제한 삭제</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2)·(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그룹의 정의 <b>①</b>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b>②</b>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input type="checkbox"/> 정의 명확화 <b>①</b>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b>②</b>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의 정의 <b>①</b>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b>②</b>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정의 명확화 <b>①</b>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b>②</b> (좌 동)

####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의 정의</p> <p>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업장</p> <p>②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p> <p>③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사업장</p> <p>④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p>	<p><input type="checkbox"/> 정의 명확화</p> <p>① (좌 동)</p> <p>② (좌 동)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b>순소득</b>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p> <p>③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p> <p>④ (좌 동) -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p>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p> <p>○ 외부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p>	<p><input type="checkbox"/>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p> <p>○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p>

〈개정이유〉 명칭 및 정의 명확화

④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2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유로 이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 (좌 동)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7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 미납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신 설>	<input type="checkbox"/>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 (좌 동)  - 차감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67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조정대상조세의 계산</p> <p>○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 반영</p> <p>* 이연법인세부채(회계상 법인세비용 &gt; 세법상 법인세) → 가산 이연법인세자산(세법상 법인세 &gt; 회계상 법인세비용) → 차감</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input type="checkbox"/> 결손취급 특례 신설</p> <p>○ (좌 동)</p> <p>○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 용연도에 결손취급 특례* 선택 허용</p> <p>*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p> <p>※ 구체적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p> <p>-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법 §78)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p> <p>* 법인의 소득발생 시가 아닌 이익분배 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73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p> <p>* 추가세액의 총액은 ①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②기업별로 배분</p> <p>○ (국가별 배분)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50:50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배분</p> <p>○ (기업별 배분) ①·② 중 선택</p> <p>①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p> <p>②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input type="checkbox"/> 기업별 배분방법 보완</p> <p>○ (좌 동)</p> <p>○ 지정배분(②) 적용 후 미납시 배분방법 신설</p> <p>○ (좌 동)</p> <p>-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②)된 추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재 : 최종모기업에 배분</li> <li>▪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 법정배분(①) 적용</li> </ul>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74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최소적용제외 특례</p> <p>○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①매출액 평균 및 ②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p> <p>* ① (매출액 평균) 1천만 유로                  ②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 평균) 1백만 유로</p> <p>○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특례의 예외 신설</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p> <p>* ① 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 → 미충족하게 되거나 ② 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 → 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①배당공제제도* 또는 ②투과기업**에 대한 특례</p> <p>* 배당금액을 지급기업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게만 과세</p> <p>**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p> <p>○ (대상기업) 최종모기업</p> <p>* ①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거나 ②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특례) ①배당액 또는 ②지분 보유자 귀속분을 해당 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대상기업 확대 및 대상조세 차감방법 보완</p> <p>○ (좌 동)</p> <p>- ①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②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p> <p>* 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p> <p>**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p> <p>○ (좌 동)</p> <p>-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p> <p>* ①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순조세비용)</p> <p>②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7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시과세기업의 정의  ○ 투과기업의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 (좌 동)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⑫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국조법 §80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환기 적용면제</p> <p>○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p> <p>*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p> <p>○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p> <p>*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input type="checkbox"/>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p> <p>○ (좌 동)</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p> <p>*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⑬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80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일반적 적용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❶소액 ❷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❸초과이익 요건</li> <li>※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li> </ul> </li> <li>○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li> </ul>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li> <li>○ (효과) 전환기*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12.31. 이전 개시하고 '26.12.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li> </ul> </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⑭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83①·④, §8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 신고</li> <li>*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좌 동</li> <li>○ (특례) '26.6.30 전 신고기한 도래 시 '26.6.30까지 신고</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 신고 등 신고자 ○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input type="checkbox"/>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 (좌 동) ○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시기) 수입신고 시</li> <li>○ (신고자) 수입하려는 자</li> <li>○ (세액심사)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신고한 세액 등 심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p>

<개정이유> 세액심사 보완요구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세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76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p> <p>○ (대상)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p> <p>*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45개국</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내용)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 적용</p> <p>* 대통령령에서 무관세 규정</p>	<p><input type="checkbox"/> 적용 대상 확대</p> <p>○ (좌 동)</p> <p>-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국가(25.1.1. 전 졸업국가도 포함)로서 졸업 개시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국가</p> <p>*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p> <p>○ (좌 동)</p>

<개정이유> 최빈개도국 경제자립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106①1)**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li> <li>○ (지정 반입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li> <li>-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지정 반입 장소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통관우체국</p>

**<개정이유>** 국제우편물로 수출되는 물품 관세 환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 §111②, 관세령 §13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input type="checkbox"/>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li> <li>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li> <li>③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li> <li>④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li> <li>⑤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⑥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li> <li>⑦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li> </ul>

<개정이유> 재조사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15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물품</li> <li>○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li> </ul>	<input type="checkbox"/>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개정이유>** 내국운송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원활화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177①(1)나)**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可</li> <li>○ 내국물품: 1년 범위</li> </ul>	<input type="checkbox"/>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1년범위 + 1년 연장 가능</li> </ul>

**<개정이유>** 내·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23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 현재 통관보류 규정(§237①(3))을 근거로 제한중</p>	<p><input type="checkbox"/>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p> <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 수출입 금지</p> <p>*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수출입 가능</p>

**<개정이유>** 마약류 수출입 제한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보호</p> <p>○ (보호대상) 지식재산권*</p> <p>*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p>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p>○ (통관보류)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보류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 추가</p> <p>○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p> <p>-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p> <p>*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p> <p>○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p>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248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 ○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시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 발급 가능	<input type="checkbox"/> 발급 대상자 확대 ○ (좌 동) ○ 신고인 → 화주 또는 신고인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26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청 및 세관공무원은 직무 집행시 무기 휴대 및 사용 가능 ○ (무기) 권총·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	<input type="checkbox"/>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 ○ (무기등)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무기등* * 장비(차량등), 장구(수갑, 포승, 방패등), 분사기 및 무기(권총, 소총, 도검등)

〈개정이유〉 무기등 범위 명확화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 270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가격조작죄 벌칙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하 징역 또는</li> <li>○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li> </ul> <p>※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p>	<p><input type="checkbox"/> 산정기준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가 낮은(예, 0원)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시 실효성 미흡</li> <li>○ (좌 동)</li> <li>○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li> <li>* 신고가격 - 실제 물품가격</li> </ul>

**<개정이유>** 가격조작죄 처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작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275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p> <p>*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p> <p>○ 처벌대상</p> <p>- 납세신고 시</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처벌형량</p> <p>- 명의대여·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input type="checkbox"/>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p> <p>- (좌 동)</p> <p>-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p> <p>*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p> <p>○ 타인 명의 사용행위 형량 강화</p> <p>① 자신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p> <p>*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p> <p>②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p>

<개정이유> 수입물품 명의 도용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 §329④, 관세령 §288⑦)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의 민간위탁 ○ 보세구역 내 사업자 등록 업무 <추 가>	<input type="checkbox"/> 위탁 업무 추가 ○ (좌 동) - 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
<input type="checkbox"/> 등록 등 업무 위탁 대상 ○ 보세운송업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추가 ○ (좌 동) ○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관세업무 민간위탁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2(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사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input type="checkbox"/> 직무범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리</li> </ul>

**<개정이유>** 관세법과 동일하게 규정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13의7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b>&lt;신 설&gt;</b>	<input type="checkbox"/> 탈세 상담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 금지</li> </ul>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li> </ul>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책임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가담·방조·상담하는 분부터 적용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15①, §21의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사는 공무원 겸임 금지 ○ (예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근 공무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 수행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겸임 금지 예외대상 추가 ○ (좌 동) -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업무
<input type="checkbox"/> 업무의 자문 범위 ○ 공공기관은 관세사 직무 관련사항에 대해 관세사회에 업무 위촉 또는 자문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 (좌 동) ○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는 자문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촉 또는 자문하는 분부터 적용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3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명의대여 등 금지 대상 행위  <b>①</b> 대여 행위  <b>②</b> 빌리는 행위  <b>③</b> 명의대여 알선 행위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지의무 위반시 몰수·추징 근거 신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몰수 및 추징  ○ 금지의무(①~③)를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몰수·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신설 규정을 적용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 (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 2회 연속 → 3회 연속 ○ 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45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li> <li>○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li> <li>- (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일 이내 → 3개월 이내</li> </ul>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 81의1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과세예고통지 대상</p> <p>①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p> <p>②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 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p> <p>③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p> <p>-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대상 조정</p> <p>○ (좌 동)</p> <p>- 배제사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li> </ul>

<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 §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가능</li> <li>○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li> </ul>

<개정이유> 세무사 책임성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 §12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무사 광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사·세무법인은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가능</li> <li>○ 허위·과장·비방 광고, 품위 훼손·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광고 등 금지</li> </ul>

<개정이유> 세무사 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 §2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 및 관련 이익 몰수·추징  ○ 금지 대상 행위 <b>①</b> 대여 행위 <b>②</b> 빌리는 행위 <b>③</b> 명의대여 알선 행위  ○ 몰수 및 추징 대상 - 대여 금지 의무 <b>①</b> 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input type="checkbox"/> 몰수·추징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 (좌 동)                 </div> ○ 대상 확대 - 금지의무 <b>①~③</b> 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빌린 자, 알선자 모두 포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몰수·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세법 §6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 과세자료 제출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좌 동)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조사자료

**<개정이유>** 금융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령	교통세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세무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령	세무사칙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제법	과제령	과제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관세사법	관세사법	관세사령	관세사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	FTA관세령	FTA관세칙

※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3

이 자료는 2024년 7월 25일(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4. 7. 25.

기 획 재 정 부



# 목 차

## I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중견기업 범위 조정 .....	1
①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	1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1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2
① 현행 제도 .....	2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2
③ 적용시점 .....	2
(3)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3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3
② 점감구조 적용 시기 .....	3
③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는? .....	3
(4)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인건비) .....	4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4
(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5
① 현행 제도 .....	5
② 개정 취지 .....	6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	7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8
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취득 방법 .....	8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8

###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9
① 현행 제도 .....	9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취지 .....	9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10
① 현행 제도 .....	1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10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11
① 현행 제도 .....	1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11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12
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 .....	12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12
(5)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	13
① 현행 제도 .....	1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13

###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14
① 개정 취지 .....	14
② 개정 내용(법인세 세액공제) .....	15
③ 법인세 세액공제 계산사례 .....	15
④ 개정 내용(배당소득 분리과세) .....	16
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사례 .....	17
⑥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 .....	18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19
① 개정 취지 .....	19
②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 .....	19
③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 .....	19
(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20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20
②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외의 구체적 범위 .....	20
③ 배당소득 과세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	20
(4)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	21
① 현행 펀드 과세체계 및 개정 내용 .....	21
② 시행시기 .....	21

## II.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22
① 개정 취지 .....	22
② 적용 시기 .....	22
③ 적용 사례 .....	22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23
① 개정 취지 .....	23
② 현재 출산·양육수당과 구분 .....	23
③ 적용 특례 .....	23
④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 .....	24
⑤ 세부담 완화 사례 .....	24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25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25
② 기대 효과 .....	25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26
① 현행 제도 .....	26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27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28
① 근로장려금(EITC) 개요 .....	28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29
③ 개정 효과 .....	29
(3)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30
① 현행 제도 .....	3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30
(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31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31
②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할 이유는? .....	31

###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	32
① 현행 제도 .....	32
② 개정 취지 .....	32
③ 적용 사례 .....	33
(2)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34
① 탁주의 첨가원료를 확대(향료·색소 추가)한 이유는? .....	34

### Ⅲ.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1)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	35
①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	35
② 개정 취지 .....	35
(1-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	36
①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	36
② 개정 취지 .....	36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	37
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	37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38
① 개정 취지 .....	38
② 시가의 판단기준 .....	38
③ 할인금액 적용 사례 .....	38
(4)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	39
① 현행 제도 .....	3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39

####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40
① 현행 제도 .....	4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40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41
① 개정 취지 .....	41
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 .....	41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42
① 현행 제도 .....	42
② 납세조합 활용 납부 사례 .....	42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43
① 현행 제도 .....	4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43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44
① 현행 제도 .....	44
② 개정 내용 .....	44
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	45
④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45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	46
① 개정 내용 .....	46
② 개정 취지 .....	46
(7)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	47
① 현행 제도 .....	47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47

###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48
① 현행 제도 .....	48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48
(2)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49
① 도입 취지 .....	49
② 제도 개요 .....	49
③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 .....	50
④ '28.1.1.부터 시행하는 이유 .....	50
(3)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51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51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52
① 현행 제도 .....	52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52
③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 .....	52
(5)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53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53
② 183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 .....	53
(6)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	54
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개요 .....	54
② 교환대상 정보 .....	54
(7)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	55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개요 .....	5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55

##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56
  -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56
  -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 56
-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57
  -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57
  - ② '26년부터 시행하는 이유 ..... 57
- (3)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58
  - ① 현행 제도 ..... 58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58
- (4)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 ..... 59
  - ① 현행 제도 ..... 59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59

### 2. 납세자 권익 보호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60
  - ① 현행 제도 ..... 60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60
- (2)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 61
  - ① 현행 제도 ..... 61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61

## V. 기타

- (1)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 62
  -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 62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62
-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63
  - ①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 63
  -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64
  -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65
  -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66
  - ⑤ 신고기한 특례 규정 개정 내용 및 배경 ..... 67

# I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 · 고용 · 지역발전 촉진

#### (1) 중견기업 범위 조정 (상세본 p.3)

##### ①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제외)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것
- (독립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②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
- (규모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미만인 기업일 것

#####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
- (개정 내용)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 (R&D 세액공제 적용시 5배)로 조정

#### <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업종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IT개인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500억원	1,000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중견기업	4,500억원	3,000억원	2,400억원	1,800억원	1,200억원
R&D비용	7,500억원	5,000억원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매 5년 마다 소관부처에서 재검토

- (적용시점) 조특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상세본 p.4)

### ① 현행 제도

-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3년간 유지하는 제도

#### <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

구분		내용
규모 기준	①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초과
	② 자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③ 관계회사간 매출액 합	업종별 400~1,500억원 초과
유예기간		최초 사유발생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졸업유예 기간 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상장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추가 2년 유예(3 → 7년)

### ③ 적용 시점

- 조특령 시행일(하반기 수시개정 예정)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출액 또는 자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부터 적용

### (3)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상세본 p.6)

####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유예기간 종료)한 경우 3년(일반 R&D의 경우 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
- (개정 취지)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 변화 >

(단위: %)

구 분	R&D비용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	신성장·원천	일반	국가전략	신성장·원천	일반
중소기업	40	30	25	25	12	10
중견기업 (현행→개정)	30 → 35	20 → 25	15 → 20	15 → 20	6 → 9	5 → 7.5

#### ② 점감구조 적용 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유예기간 종료)한 기업에 점감구조 적용
    - '21년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이미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점감구조 적용 가능
- \* (예) '21년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3년('22~'24년)간 졸업이 유예되고 '25년에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점감구조에 따른 공제율 적용

#### ③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는?

-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 상대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장을 집중 지원
  - 코스피·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졸업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3 → 7년)

**[4]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인건비)** (상세본 p.8)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R&D 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연구 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 적용
  - \* (예) 연간 실제 투입시간 비율이 국가전략기술 90%, 일반 10%인 연구원:  
(현 행) 인건비의 100% 일반 공제율 적용 →  
(개정안) 인건비의 90%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인건비의 10%는 일반 공제율 적용
  - \*\* 내국인이 실제 연구 투입시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R&D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원의 실제 투입 시간 입증 자료를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 필요
  
- **(개정 취지)** 연구원이 실제 연구한 시간에 맞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
  -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과 연관된 일반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세본 p.11)

① **현행 제도**

□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

- **(지원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공제액)** 기업규모·소재지·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

① 기본공제	공제액 (단위:만원)				② 추가공제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1,300	9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 **(공제기간 및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② 개정 취지

### ① 세액공제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고용유인 기능 강화

- **(현황)** 계산의 복잡성·가산세 부담 등으로 고용유인 효과 제한
  - 기업의 채용시점에 공제여부가 불투명하여 세금 신고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치게 됨에 따라 고용유인 기능 부족
  -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전액 추징되고, 계산이 틀릴 경우 가산세 등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
- **(기대효과)** 기업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공제여부와 공제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용창출 유인기능 강화

#### 【참고】 상시근로자 및 세액공제액 계산 예시

- (24년) 단시간 근로자 5명 4월 채용(전원 청년외, 수도권 중소기업 가정)  
→ (상시근로자)  $5 \times 0.5 \times 9/12 = 1.87$ 명 ↑, (세액공제)  $1.87 \times 850 = 1589.5$ 만원
- (25년) 단시간 근로자 중 3명 6월 퇴직, 9월 기간제 2명 채용  
→ (상시근로자)  $3 \times 0.5 \times 5/12 + 2 \times 0.5 + 2 \times 4/12 = 2.29$ 명,  
(세액공제) ①'24년분 1589.5 + ②'25년 신규( $2.29 - 1.87 = 0.42$ ) 357 = 1946.5만원
- (26년) 기간제 근로자 2명 1월 퇴직 → (상시근로자) 1명, (세액공제) 없음  
<추징> ①'24년분  $\Delta 1,479$ 만원( $\Delta 0.87$ 명 $\times 2$ 년) + ②'25년분  $\Delta 357$ 만원( $\Delta 0.42$ 명 $\times 1$ 년)

### ② 기업의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임금격차 완화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 **(현황)**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근로여건 개선 지원 부족
  -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나,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근로자\*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
- \* 정년퇴직자, 자발적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부적합
- **(기대효과)**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하여 임금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

###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 (계산의 전제) 지방 중소기업, 모두 청년, T년도 인건비 증가율 20% 미만, 연봉(기간제 3,000, 단시간 1,500, 초단시간 1,000만원), 입·퇴사일 매월 15일 가정

□ (사례1) ①T년 3월 계속고용 근로자\* 5명 채용+②T+1년 3월 2명 퇴사  
\*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명)	공제/추징(만원)	계속고용	탄력고용
T	4.16 =5×10/12	6,448 =4.16×1,550	-	-
T+1	3.33 =3+2×2/12	△1,286.5 =-0.83×1,550	3명, 7,200만원	-
T+2	3.00	△511.5 =-(-1.16-0.83)×1,550	3명, 7,200만원	-
합계	4,650만원(= 6,448 - 1,286.5 - 511.5)		14,400만원(= 7,200 + 7,200)	

□ (사례2) ①T년 3월 기간제(1년 이상) 근로자 5명 고용 +  
②T+1년 12월 2명 퇴사, 3명 정규직 전환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명)	공제/추징(만원)	계속고용	탄력고용
T	4.16 =5×10/12	6,448 =4.16×1,550	-	2,500만원 =12,500 × 0.2
T+1	4.83 =3+2×11/12	11,386.5 =6,448(고용유지) +0.67×1,550(신규) +3×1,300(정규 전환)	-	175만원 =(13,750-12,875) × 0.2
T+2	3.00	△4,634.5 =-(-4.16-3)×1,550×2 -0.67×1,550	3명, 7,200만원	-
T+3	-	-	3명, 7,200만원	-
합계	13,200만원(= 6,448 + 11,386.5 - 4,634.5)		17,075만원(= 14,400 + 2,675)	

□ (사례3) ①T년 1월 계속고용 근로자 1명, 기간제(18개월) 근로자 1명 고용 +  
②T+1년 7월 기간제 1명 퇴사, 단시간·기간제(16개월) 2명 고용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명)	공제/추징(만원)	계속고용	탄력고용
T	2.00	3,100 =2×1,550	1명, 2,400만원	600만원 =3,000 × 0.2
T+1	2.00 =1+1×6/12 +0.5×2×6/12	3,100 =2×1,550(고용유지)	1명, 2,400만원	-
T+2	1.83 =1+2×0.5×10/12	△527 =-(-0.17×2×1,550)	-	-
합계	5,673만원 (= 3,100 + 3,100 - 527)		5,400만원(= 4,800 + 600)	

##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상세본 p.13)

### 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취득 방법

- 광업권·조광권\*의 ①직접 취득 뿐 아니라, ②간접 취득과 ③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광업권)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  
(조광권)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

① (직접 취득) 해외의 광업권·조광권을 취득

② (간접 취득)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

- 외국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광구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

③ (외국자회사 통한 취득)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①,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조광권 취득

###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 지원 필요

- (개정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 완화

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도 포함

② 내국인 100%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

## 2. 기업경쟁력 제고

### (1)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상세본 p.17)

#### ① 현행 제도

-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 시 상속세 부과

#### < 가업상속공제 제도 주요내용 >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액	▸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은 20% 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5년)	▸ (업종 유지 등) 주된 업종 유지(대분류내 변경 허용), 대표이사 종사,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 (지분 유지)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 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취지

-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세본 p.20)

### ① 현행 제도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임

□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함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상세본 p.21)

**① 현행 제도**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표준 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일명 '톤세' 제도)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 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동 제도는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05년 도입 후 5년 단위로 일몰 연장 중

\*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20여 개 국가에서 톤세 제도를 운영 중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차등(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해 30% 할증)하여 적용

\*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 톤당 1운항일 이익 >

개별선박 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단위: 원)		
	현행	개정안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분	14	(좌 동)	18.2
1,000~10,000톤	11		14.3
10,000~25,000톤	7		9.1
25,000톤 초과분	4		5.2

□ (개정 취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 인상

○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 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 도모

####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상세본 p.23)

##### 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벤처기업법」 §16의11)
  - (요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 하락(30% 미만 또는 최대주주 지위 상실)
  - (존속기간) 최대 10년(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 (절차) 요건충족 후 주주 동의(발행주식총수의 3/4)를 얻어 발행
  - (현물출자) 총주주 동의 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 가능

#####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최근 도입('23.11월)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 (개정 내용)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벤처기업법」 §16의11)
  -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벤처기업법」 §16의12)
-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과세이연 신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5)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상세본 p.25)

### ① 현행 제도

-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

\* (분할법인)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0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하고, '시가-장부가액' 차이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 (적격분할 요건) 사업목적의 분할,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 (사업목적) 5년 이상 계속하던 사업을 분할  
(사업의 계속성)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유지  
(고용 승계) 근로자 80% 이상을 승계하고,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 유지  
(지분의 연속성)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고,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도록 규정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

- (개정 취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합리화

\* 현재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기간: '24.6.4.~7.16.)

### 3. 자본시장 활성화

####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상세본 p.26)

##### ① 개정 취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 주요국 주주환원율(%), 배당성향+자사주매입률, '14~'23 평균):  
(韓)29 (美)91 (中)31 / (선진평균)67 (신흥평균)38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경영자와 투자자 간 유인구조를 일치 시킴으로써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
  - 주주환원 확대는 주식 보유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② 개정 내용(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②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 ②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③ 법인세 세액공제 계산사례

- (사례1) 주주환원금액이 '22~'24년 평균 1조원, '25년 1.2조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20%인 甲 기업(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

법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	세액공제 금액
甲	대상 금액 = 1,200억원 = [12,000억원 - (10,000억원 × 1.05)] × 80%	세액공제 금액 = 60억원 = Min [1,200억원 × 5%, 12,000억원 × 1%] *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사례2) 주주환원금액이 '22~'24년 평균 0.8조원, '25년 1.2조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30%인 乙 기업(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

법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	세액공제 금액
乙	대상 금액 = 2,520억원 = [12,000억원 - (8,000억원 × 1.05)] × 70%	세액공제 금액 = 120억원 = Min [2,520억원 × 5%, 12,000억원 × 1%] *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④ 개정 내용(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①「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상장법인으로서, ②주주환원금액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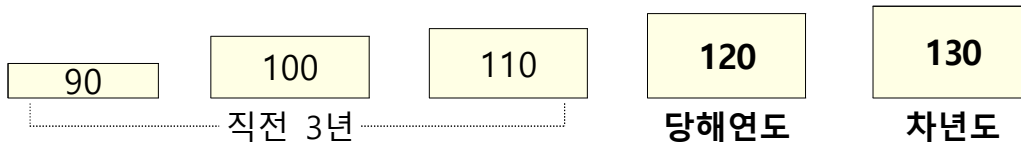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text{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frac{\text{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times 10\%}{\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참고】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사례 적용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 100, 당해연도 120(증가율 20%), 차년도 130 배당 가정



■ 소득금액 비율 =  $\frac{20 + 100 \times 10\%}{100} = 30\%$

⇒ 분리과세 금액 =  $130 \times 30\% = 39$

○ (과세방식)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9%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종합과세자는 ①25% 분리과세 또는 ②종합과세(2천만원 한도 9%) 중 선택

\* ① 배당 증가금액 등 × 25% + 그 외 배당 × 비교 종합과세

② 배당 증가금액 등(2천만원 한도) × 9% + 그 외 배당 × 비교 종합과세

□ (적용기간) '26.1.1.~'28.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금

### 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사례

- 甲사(자율공시 이행한 상장법인)가 '22~'24년 평균 1,000억원 '25년 1,200억원 주주환원  
→ 甲사 개인주주의 분리과세 소득금액비율 : 30%(증가율20%+10%)
- '26년 甲사 개인주주 소득내역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
  - 주주A : 배당소득 1,200만원, 다른소득 없음 → 360만원(1,200만원×30%)
  - 주주B : 배당소득 3,600만원, 다른소득 없음 ] 1,080만원(3,600만원×30%)
  - 주주C : 배당소득 3,600만원, 다른소득 10억원 ]

주주	산출세액(지방세 제외) 및 납부방법		경감액
A	현행	168만원 원천징수(1,200만원×14%)로 납세 종결	△18만원
	개정	150만원 원천징수(360만원×9% + 840만원×14%)로 납세 종결	
B	현행	504만원 납부 =Max[㉠3,600만원×14%, ㉢2천만원×14%+1,600만원×기본세율]	△54만원
	개정	Min[①,②] = ② 450만원 납부 ①(25% 분리과세 선택) 622.8만원 =1,080만원×25% + Max [ ㉠2,520만원×14% ㉢2천만원×14%+520만원×기본세율 ] ②(25% 분리과세 선택X) 450만원 =Max [ ㉠1,080만원×9%+2,520만원×14% ㉢1,080만원×9%+920만원×14%+1,600만원×기본세율 ]	
C	현행	39,406만원 납부 =Max [ ㉠3,600만원×14% + 10억×기본세율 ㉢2천만원×14% + 10억1,600만원×기본세율 ]	△216만원
	개정	Min[①,②] = ① 39,190만원 납부 ①(25% 분리과세 선택) 39,190만원 =1,080만원×25% + Max [ ㉠2,520만원×14%+10억원×기본세율 ㉢2천만원×14%+10억520만원×기본세율 ] ②(25% 분리과세 선택X) 39,352만원 =Max [ ㉠1,080만원×9%+2,520만원×14%+10억원×기본세율 ㉢1,080만원×9%+920만원×14%+10억1,600만원×기본세율 ]	

## ⑥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

- (도입취지)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 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 목적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차이
- (적용대상 · 요건) 적용 대상을 주주(주식시장의 수요자)에서 기업(공급자)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단순화하여 정책 체감효과 증대
  - 또한, 결산배당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달리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도 포함하여 정책 실효성 확대

	'14년 배당소득증대세제	'24년 주주환원 촉진세제(안)
도입 취지	▶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환류를 통한 내수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 주주환원: 배당 및 자사주소각
지원 내용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법인세</b> ▶ 없음                 </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배당소득세</b> ▶ (분리과세) 14 → 9% ▶ (종합과세) '15년 25% 분리과세 '16-'17년 5% 세액공제                 </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세액공제</b> </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분리과세) 14 → 9% ▶ (종합과세) 25% 분리과세                 </div>
핵심 요건	▶ 배당증가율,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고배당 기업( <u>요건이 복잡하고 엄격</u>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금액을 5% 초과하여 증가시킨 기업 ( <u>요건 단순화</u> )
적용 범위	▶ 현금배당*(전체) * 결산배당(중간배당 제외)	▶ (법인세) 배당*+자사주소각 * 결산배당(중간배당 포함) ▶ (배당소득세) 현금배당*(일부) * 결산배당(중간배당 포함)

\*   : 배당소득증대세제 대비 지원 확대사항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p.29)

### ① 개정 취지

-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납입·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
  -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
- ISA 도입('16.3월)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 및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도 감안
  - \* 서민형의 경우 '18년부터 250 → 4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 상향

### ②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

-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
  - 국내 상장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

### ③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

-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
-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납입한도(2억원) 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9%) 적용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

### (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상세본 p.31)

\*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상품

####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조각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세법상 과세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개정 내용)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 해당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함

#### ②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

- 조각투자 서비스 취지\*, 조세회피 가능성\*\*, 최근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

\* 다수의 소액투자를 위한 것으로 증권의 공모(50인 이상)를 전제

\*\* 기초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소득의 무기한 유보 방지 필요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23.12월) 등

#### ③ 배당소득 과세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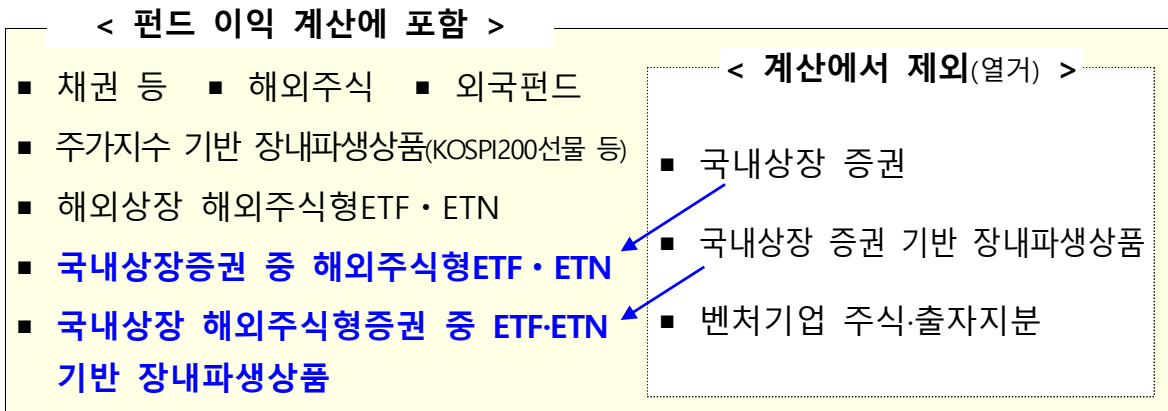
-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
-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시 신고·납부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

#### (4)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상세본 p.35)

##### ① 현행 펀드 과세체계 및 개정 내용

- (펀드 과세체계) 펀드 이익의 분배, 펀드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일정 이익은 과세 제외
- (개정 내용)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



- (개정 취지) 해외주식,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경우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도 과세대상에 포함

##### ② 시행시기

- 소득령 시행일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부터 적용
- 소득령 개정안은 '24.8월 입법예고 거쳐 9월 중 공포·시행 예정

## II

##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상세본 p.36)

##### ① 개정 취지

#### □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 유도

- 만혼·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필요

##### ② 적용 시기

####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 ③ 적용 사례

#### □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6년 3월 혼인 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 □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상세본 p.39)

### ① 개정 취지

-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노력 뒷받침
  - 아울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 해소

### ② 현재 출산·양육수당과 구분

-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
  - 현재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현행 유지)
  -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 급여

### ③ 적용 특례

- ('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24.1.1.~'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21.1.1.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

#### ④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

-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⑤ 세부담 완화 사례

-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인 B씨가 '25.1.1.에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에서 '25.6.1.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 (비과세 적용 전 근로소득세) 약 2,440만원\*
  -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 약 260만원\*

\* 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약 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상세본 p.40)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개정 내용)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현행(만원)	개정(만원)
자녀세액공제 (8~20세)	1명	15	<b>25</b>
	2명	35	<b>55</b>
	3명 이상	35+30×(자녀수-2)	<b>55+40×(자녀수-2)</b>

② 기대 효과

-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출산 유인 효과 기대
  - 특히,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추가 출산 유인 제공
-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결혼·출산에 친화적 성격의 세제를 만들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상세본 p.41)

#### ① 현행 제도

□ 도서공연비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30%) 적용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요내용 >

구분	구체적 내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 15%</li> <li>○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li> <li>○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도서공연비)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li> <li>○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li> </ul>		
공제한도	<b>총급여</b>		
	<b>공제한도</b>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b>300</b>	<b>250</b>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b>300</b>
			-

##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서민·중산층의 대중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음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

: (100만원 미만) 9.3 (200~300만원) 9.7 (400~500만원) 14.7 (900만원 이상) 23.7

- **(개정 내용)**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23년 기준 약 13,000여개)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

-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율)**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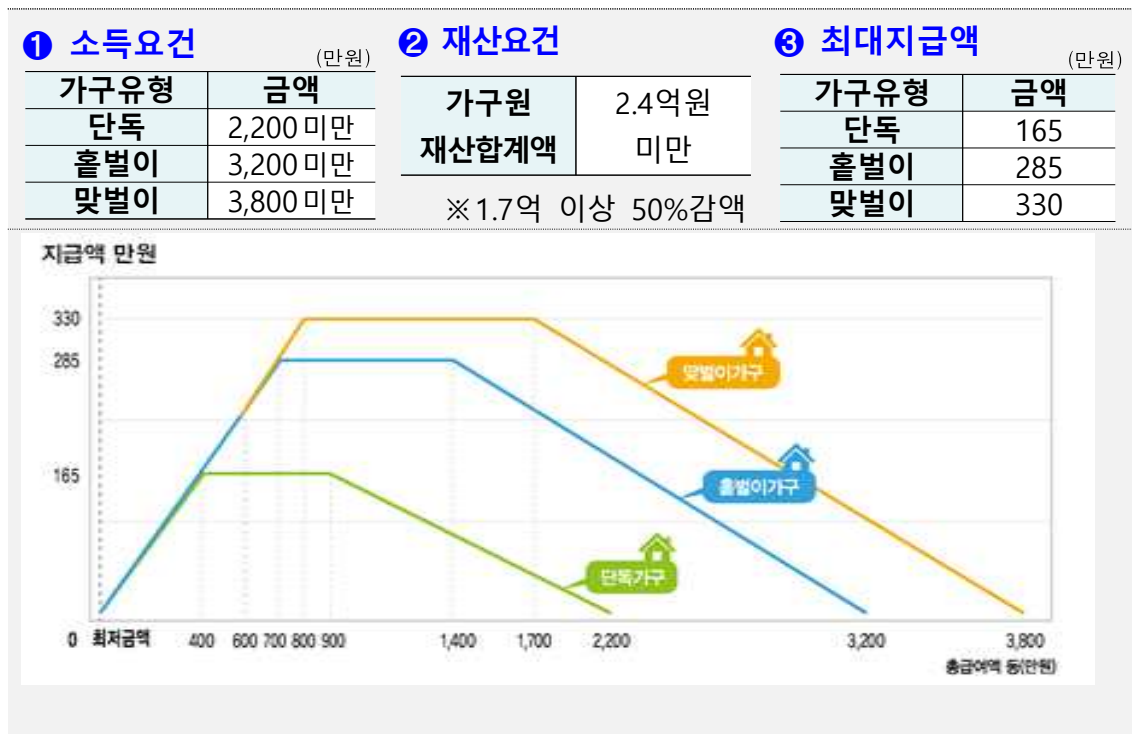
-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

##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상세본 p.43)

### ① 근로장려금(EITC) 개요

- (도입목적)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08년 도입)
- (지원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산정방식)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른 EITC 지급액 산정



- (지급시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
  -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지급 가능(12월 및 다음 해 6월, 연 2회)
- (지급실적, '22년 귀속) 416만 가구, 4.6조 원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개정 취지)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시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③ 개정 효과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3,800 → 4,400만원)로 약 5만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

### (3)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상세본 p.47)

#### ① 현행 제도

##### □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제도

-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 경력단절여성 공제액 우대(만원): (중소기업)+600 (중견기업)+350 (대)+400

\*\* 우대 대상: 청년,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감면 대상: 청년(5년간 90% 감면),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 경력단절여성 요건

- ❶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❷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표준산업 중분류)의 기업에 취직할 것
- ❸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❹ 퇴직 후 2~15년 이내일 것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경력단절남성 지원)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
- (업종제한 폐지)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표준산업 중분류) 재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8세)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

**(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상세본 p.48)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개정 내용)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수소차는 현행 유지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정내용>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100만원→70만원	300만원	400만원
(교육세 등 포함시)	(143만원→100만원)	(429만원)	(572만원)

②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할 이유는?

-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 심층평가 결과\* 등을 감안한 것임
  - \* '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KDI) :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고려할 필요

### 3.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1)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상세본 p.54)

##### ① 현행 제도

-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건설기계는 경우 '18.1월 이후 취득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 (20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 ② 개정 취지

-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급증 완화 및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통한 산업안전 강화
    -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 처분시 일시적으로 세부담 급증\*
- \* 신규 건설기계 구입을 위해서는 기존 노후된 건설기계의 처분이 필요하나 세부담으로 인해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

### ③ 적용 사례

□ (가정)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20년 건설용 크레인 구입(취득가 2억원) 후 '25.1.1. 해당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 건설용 크레인의 내용연수(5년) 동안 감가상각비(연 4천만원)를 필요경비로 계상 → '25.1.1. 현재 장부가액 0원

○ '25.1.1. 처분시 처분이익 1억원 [1억원 - 장부가액(0원)]

□ (세부담 변화)

○ (현행) 소득세 부담 1년간 1,956만원(적용 최고세율 35%)

○ (개정) 소득세 부담 4년간 총 1,032만원(적용 최고세율 15%)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세액	60만원	324만원	324만원	324만원

\* 별도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2) 주류 관련 제도 개선

(상세본 p.58)

### ① 탁주의 첨가원료를 확대(향료·색소 추가)한 이유는?

- 탁주에 허용가능한 첨가물의 확대로 다양한 맛과 향의 제품 개발·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현재는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
  - 개정 시에는 탁주로 분류되어 상표명에 "탁주·막걸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세부담 경감

#### 【참고】 세부담 변화 예시

-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한 출고가격 1천원, 용량 750ml 인 주류 1병 세부담
  - (현행) 기타주류로 분류(세율: 과세표준\*의 30%) → 246원
    - \*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의 81.9%(기준판매비율 18.1% 적용)
  - (개정) 탁주로 분류(세율: 1ℓ당 44.4원) → 33원

### Ⅲ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1-1]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상세본 p.62)

###### ①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② 개정 취지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있음
-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 하향 조정

######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미 국	영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상속세 최고세율	40%	40%	55%	30%	45%

**[1-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상세본 p.63)

①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구분		'97년	현행
기초 공제		2억원	
인적 공제	자녀·연로자	1인당 3천만원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 × 5백만원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	75세까지 연수 × 5백만원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5~30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 가능(배우자 공제는 별도)

② 개정 취지

-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5천만원 → 5억원)

##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세본 p.64)

### 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과세 시행 유예
  -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19.) 성과 등 점검 필요
-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
  -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27년('26년 과세기간분) 개시 예정으로, 해외거래 검증 자료로 활용 가능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상세본 p.68)

**① 개정 취지**

- 주요 기업 등은 자사 및 계열사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제품 구입 시 할인가격 적용
  -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② 시가의 판단기준**

-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통상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

**③ 할인금액 적용 사례**

- **(사례1)** A 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4,000만원)의 25% 할인, 종업원 甲은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매
  - 甲의 할인금액(1,00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800만원
  -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200만원 근로소득 과세
- **(사례2)** B 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300만원)의 30% 할인, 종업원 乙은 30% 할인받아 210만원에 구매
  - 乙의 할인금액(9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240만원
  -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 (4)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상세본 p.70)

##### ① 현행 제도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 (손금불산입 금액)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한 이자비용
  - (적용 예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이자비용 전체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적용 예외 대상인 금융·일반지주회사 중, 일반지주회사는 예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 \* 적용 예외 대상: (현행) 금융·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개정 취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취지를 고려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차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다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산입 허용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 2. 비과세·감면 정비

###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상세본 p.71)

#### ① 현행 제도

- (도입 배경)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통한 과표 양성화
- (적용 대상)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 \* 영수증 발급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자
- (공제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 [공제율] 1.3%('27년 이후 1%) [공제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00만원)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50% 하향 조정(1.3→0.65%, '27년 이후 1.0→0.5%)
- (개정 취지) '94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 감안 시 제도 효과성이 낮음\*
  - \* '22년 심층평가 결과(KDI) :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제도 축소 필요
-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 적용 중 → 상위 사업자에 한하여 공제율 축소

##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세본 p.72)

### ① 개정 취지

□ ① 전자신고 정착, 관련 ② 인프라 확충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

#### 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97% 상회\*

\* 전자신고율('03→'22년 %): (종합소득세)43.5→99.5 (법인세)92.7→99.6 (부가가치세)33.8→97.1

#### ② 전자신고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어, 지금은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편

\* 홈택스(인터넷), 손택스(스마트폰), 국세청이 보유자료를 활용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모두채움서비스, 세금비서) 등

□ 해외 주요국(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1~6년)하였으며,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

### 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여전히 50%대('23년 52.3%)에 머무르고 있어, 당분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할 계획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상세본 p.73)

① 현행 제도

-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매월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납부

조합유형	조합원 수	조합원 자격
근로자조합	50명 이상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조합	20명 이상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납세조합에 매월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미이행시 가산세 부과)하되,  
**①조합원 세액공제, ②납세조합에 교부금 지급 등 혜택 부여**

- \* ① 조합원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 적용(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 ② 납세조합에 징수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② 납세조합 활용 납부 사례

-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A로부터 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  
 甲은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5월) 대상\*

\* 내국법인인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국외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단,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매월 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납부 & 연말정산 대행

####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상세본 p.74)

##### ① 현행 제도

-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벤처확인)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업종 등에 따라 감면을 차등 적용
    - \* (일반 창업) 과밀 0%, 과밀 밖 50% / (청년·생계형) 과밀 50%, 과밀 밖 100% (신성장 서비스업) 초기 3년간 +25%p 감면을 상향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연간 5억원)
-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단,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유지)
  - \*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26.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여 1년간 감면율 유예
-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
  - \*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상세본 p.75)

① 현행 제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 ① 5년 100% + 2년 50%: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대도시(인구 30만 이상)
    - ② 7년 100% + 3년 50%: 지방 5대 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 ③ 10년 100% + 2년 50%: 그 외 낙후지역

② 개정 내용

-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여전히 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현재 수도권 중에서는 강화, 옹진, 연천, 가평이 이에 해당

< 개정안 주요내용 >

이전 前	이전 後	허용여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안 (과밀억제권역 밖)	(현행) 허용 →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 ※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허용
	수도권 밖	허용

### 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
- 감면요건 개정\* 목적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이전지원세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 \* ① 이전 전 10년 내에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을 받은 기업은 제외,  
② 이전 후 영위 업종이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

- 최근 非과밀억제권역 위주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 \* 최근 5년간('19년~'23년) 권역별 인구증감(천명):  
(과밀억제) △449 (△2%) (성장관리) +606 (+11%) (자연보전) +59 (+5%)

### ④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규정은 '25.1.1.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

다만, '24.12.31.까지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

- \* ①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63①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②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③공장 이전을 위해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

##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상세본 p.77)

### ① 개정 내용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제외

\* 배제 업종: (현행) 소비성서비스업 → (추가)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② 개정 취지

법인,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 (부동산 임대업 배제) 현재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조특법상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

**[7]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상세본 p.79)

① 현행 제도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자를 신고시 건당 50만원, 인당 연간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고소득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통한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05년도 도입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의 건당·연간 지급액 한도를 인하
  - 건당 50만원 → 25만원, 인당 연간 200만원 → 100만원
- (개정 취지)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으로 정책효과는 감소함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로 인한 피해는 과도한 측면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 건수	7,682	11,931	13,025	16,461	21,017
지급액 (백만원)	1,478	2,369	2,842	3,913	4,871

### 3. 세원투명성 제고

####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상세본 p.83)

##### ① 현행 제도

- 특정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금융회사의 전용거래계좌에 매입대금 (부가세 포함)을 입금하면 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차단
  - 현재 금, 철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운용 중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면세점 송객용역\* 추가  
→ 면세점이 송객용역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
- (개정 취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송객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수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폐업하는 사례 방지

## [2]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상세본 p.85)

### ① 도입 취지

- 조사인력 등 한계로 제한된 수의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통한 사후 세액검증 중
  -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관세사'를 통한 월단위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확정납세신고 제도 도입

### ② 제도 개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세액 납부 허용 (납부기한 최대 45일 연장)

구 분	주 요 내 용
신고대상	■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천만불 미만 업체 중 신청한 자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신고물품	■ 수입(납세)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신고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 확인·작성
신고·납부기한	■ 수입(납세)신고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시행시기	■ '28.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③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

- 관세사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 여부에 대해 기업의 선택권 부여
  - 성실신고 부담(수수료 등)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④ '28.1.1.부터 시행하는 이유

- 전산시스템 구축\*, 고시·지침 등 하위법령 제개정, 수입업체·관세사 안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8년 시행

\* ('25~'27) 정보화 예산 반영 및 시스템 개발 → ('28) 시행

### [3]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상세본 p.88)

####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또는 출국시 정산

○ (현 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

□ (개정 취지)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여 세원관리 강화

○ 이를 위해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원천세율을 20%로 既상향(18년 개정)

○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3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예: 3년 1개월) 3% 원천징수세율 적용 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상세본 p.89)

##### ① 현행 제도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10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 방지를 위함

#####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소득세법」 §94①3호)

\*\* (예) 해외주식 1만주, 취득가액 1억원, 시가 3억원의 경우

(본인 양도시) 양도차익 2억원 →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20%) 3,950만원

(배우자 시가로 증여 후 양도시) 양도차익 0원

- (개정 내용) 양도일 전 1년 이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③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

-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설정

-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98~'10년)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도 감안

\* ('98~'00년) 3년, ('01~'08년) 1년, ('09~'10년) 3년

## **(5)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상세본 p.90)

###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 및 거주자 범위 일부 확대

※ 거주자/비거주자 과세범위: (거주자)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 ① 거주자 범위를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행) 1과세기간 183일 → (개정안) ①1과세기간 183일 또는 ②계속하여 183일

####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현행) 관광·질병치료 등 일시적 사유로만 규정(소득령)  
(개정안) 친지방문, 출장·연수 등 직업·사업 관련 사유 추가하여 구체화(소득칙)

#### ③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 □ (개정 취지) 거주자 판정기준 명확화

### ② 183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

#### □ (사례1) '26.8.10.부터 국내에 계속하여 거소를 둔 경우

- (현행) '27.1.1.부터 183일이 되는 '27.7.2.부터 거주자
- (개정) '26.8.10.부터 183일이 되는 '27.2.8.부터 거주자

#### □ (사례2) '26.8.10. ~ '27.6.30.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현행) '26년, '27년 모두 비거주자\*
- \* '26년 144일, '27년 181일로 183일 기준에 미달
- (개정) '27.2.8. ~ '27.6.30. 거주자

## (6)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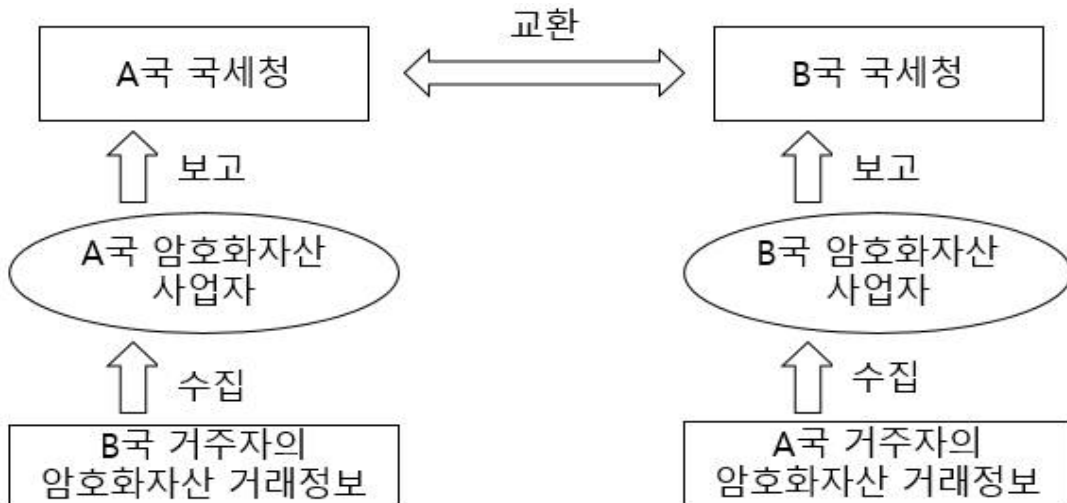
(상세본 p.94)

### 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개요

-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후,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방식 >



### ② 교환대상 정보

-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

\* 사용자의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및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암호화자산의 이름, 거래 유형, 거래의 총 지급·수취 금액, 총거래량, 거래 횟수) 등

- 거주자·내국법인은 이중거주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

\* 예) 우리나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자이나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

**[7]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상세본 p.98)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개요

- 납세의무자(법인) 재산의 강제징수로도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의무

\* 과점주주의 요건

: (국세기본법 §39) 주주 또는 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을 합계 50% 초과 ②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해당 사원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으로 한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점조합원) 추가\*

\* 과점주주와 동일한 요건 적용

- (개정 취지) 영농·영어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조합원의 과세회피를 방지할 필요

##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상세본 p.101)

#####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개정 취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부자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

#####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
  -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상세본 p.102)

###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해외직구 물품이 급증<sup>\*</sup>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 효율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만건) : ('21) 8,838 → ('22) 9,612 → ('23) 13,144

-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 전 제출한 거래정보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

- (개정 내용)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6년 시행)

- 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sup>\*</sup>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② (거래정보 제공)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sup>\*</sup>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

\*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 ③ (통관효율화)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 적용

\* (현 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택송품) X-ray 검사  
(개정안)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

### ② '26년부터 시행하는 이유

-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6년부터 시행

### [3]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상세본 p.105)

#### ① 현행 제도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23년 시행)

\* 우리나라 국채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채·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서 및 해당 국가의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① 국외투자기구를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하위 투자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비과세 적용

② 국외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함

- (개정 취지)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하위 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속된 애로를 반영

⇒ 우리나라 국채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여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원

#### (4)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

(상세본 p.107)

##### ① 현행 제도

- 국세환급금\* 중 ①체납 국세 등에 총당 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②1년간 미수령한 경우 고지분 국세에 자동으로 총당

\* 납세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해주는 금액

-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국세에 총당할 수 있으나, 해당 요건 충족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환급금 자동 총당의 요건 중 금액요건을 상향

- 총당 후 잔액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 (개정 취지) 납세자가 환급금 수령을 적기에 하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소멸시효(5년) 만료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

\* 체납 국세 등에 총당한 후 잔액이 20만원인 경우 개정 효과  
(현행) 5년간 미수령시 소멸시효 만료로 전액 국고에 귀속  
(개정안) 1년간 미수령한 경우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자동으로 총당 가능

## 2. 납세자 권익 보호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상세본 p.111)

#### ① 현행 제도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원 초과
  - (신고 기한)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1.~6.30.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수준 완화\*\*

- \* ① 소송·상호합의 등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 <과소·미신고>(현행) 위반금액 10~20%, 20억원 限 → (개정안) 위반금액 10%, 10억원 限
- <거짓·미소명>(현행) 위반금액 20% → (개정안) 위반금액 10%

- (개정 취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부담 완화
  - (비거주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른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비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필요
  -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중 정보제공은 불필요
  - (과태료) 현행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따른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하 추진
  - \* 높은 과태료 금액 외에도, 다른 과태료와 달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누진을 적용

## (2)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상세본 p.116)

### ① 현행 제도

□ 납세자가 재난·중상해 등으로 국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가능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시 가능(국징법 §13, §14)

○ (원칙) 9개월까지 연장·유예 가능

○ (특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 ①고용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②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해당 부가 세목에 대해 ③신청 시 적용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재난 등으로 부상당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

□ (개정 취지)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타 지역 사업자도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우나 현행법상 특례 적용 불가

○ 대형 재난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정상화 지원

V

기타

(1)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상세본 p.140)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 **현행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 (납입한도) 1,800만원 + ISA계좌 만기시 전환금액 + 연금주택 양도 주택차액(누적한도 1억원)
-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만기 ISA전환금 세액공제한도 추가 : MIN(전환금액×10%, 3백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현행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의 추가납입 허용**

- (대상자\*)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 기초연금수급자  
\* 부동산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대상부동산) 10년 이상 보유 주택, 건물, 토지
- (납입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중 최대 1억원(생애누적)
- (납입기간) 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 취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동산 연금화 지원**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상세본 p.151)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예시】**

- 각 개별기업 A, B, C, D는 지배종속관계로 연결된 그룹
- 기업 A는 기업 B·C·D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최종모기업
- 기업그룹(A·B·C·D)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15%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 (추가세액 납부) 소득산입규칙에 따르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예) 기업 C에서 추가세액 10이 발생한 경우 → 기업 A가 A국에 10을 납부

##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 ①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text{실효세율} = (\text{조정대상조세 합계}) \div (\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②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초과이익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text{추가세액} = (15\% - \text{실효세율}) \times \text{초과이익}(\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text{실질기반제외소득}^*)$$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 【적용 예시】

- A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B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A기업	B1기업	B2기업
① 법인세비용	200	50	45
② 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50	5	-
③ 조정대상조세(①+②)	250	55	45
④ 당기순이익	800	450	255
⑤ 조정사항(조세비용 등)	200	50	45
⑥ 글로벌최저한세소득(④+⑤)	1,000	5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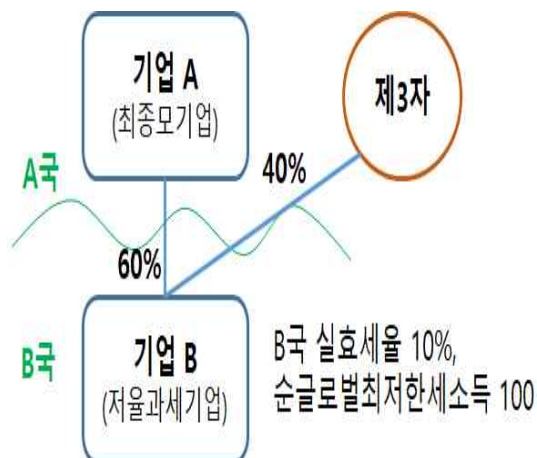
-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B국의 실효세율은 12.5%(=(55+45)<sup>③</sup>÷(500+300)<sup>⑥</sup>),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500+300)<sup>⑥</sup>)

###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소득산입비율 =  $1 - \frac{\text{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text{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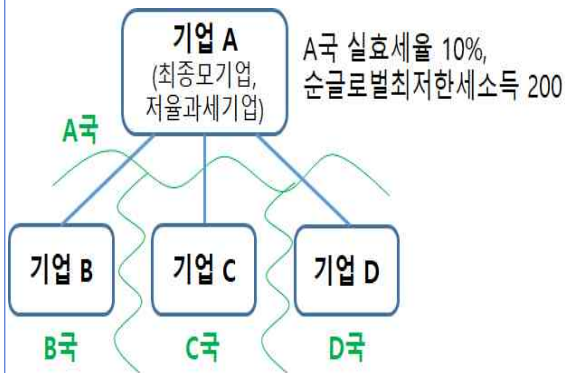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 - 10\%) \times 100 = 5$
  -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 - 40) \div 100 = 60\%$
- ∴ 기업A는  $5 \times 60\% = 3$ 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 【예시】



① 기업A 추가세액 =  $(15\% - 10\%) \times 200 = 10$

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B~D국은 도입

③ 배분비율

▶ B국 =  $50\% \times 0.7 + 50\% \times 0.3 = 50\%$

▶ C국 =  $50\% \times 0.2 + 50\% \times 0.4 = 30\%$

▶ D국 =  $50\% \times 0.1 + 50\% \times 0.3 = 20\%$

	B국	C국	D국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 기업B는 5, 기업C는 3, 기업D는 2를 각각 B국, C국, D국 과세당국에 납부

## ⑤ 신고기한 특례 규정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26.6.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더라도 '26.6.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취지)**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그 후 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로 규정
    -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경우 신고기한은 '26.6.30일이나,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26.6.30일 전에 신고의무 도래 가능
- ⇒ 기업의 이행부담을 감안하여 '26.6.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지 않도록 특례 마련

### 【'26.6.30일 전 신고의무 발생 예시(OECD)】

- '24년 사업연도가 11개월인 경우('24.1.1.~'24.11.30.)
  - '24.1.1일 시작하는 최초적용연도의 사업연도종료일이 '24.11.30일로 이로부터 18개월 후인 '26.5.31일이 신고기한
- '24년 사업연도는 12개월이었으나, '25년에 사업연도를 2개월로 변경한 경우('25.1.1.~'25.2.28.)
  - '25.1.1일 시작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 '25.2.28일로 이로부터 15개월 후인 '26.5.31일이 신고기한

2024년

# 세법개정안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2 기업경쟁력 제고
- 3 자본시장 활성화

## 2.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3.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2 비과세·감면 정비
- 3 세원투명성 제고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2 납세자 권익 보호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합니다.

#### 1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내용	기한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27.12.31.)
통합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중견기업 규모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R&D세액공제 적용시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 (R&D세액공제 적용시 5배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금액(억원)</th> <th>업종</th> </tr> </thead> <tbody> <tr> <td>1,500</td> <td>이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td> </tr> <tr> <td>1,000</td> <td>식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td> </tr> <tr> <td>800</td> <td>운수창고, 정보통신 등</td> </tr> <tr> <td>600</td> <td>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td> </tr> <tr> <td>400</td> <td>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td> </tr> </tbody> </table>	기준금액(억원)	업종	1,500	이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	식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기준금액(억원)	업종													
1,500	이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	식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 3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를 확대

	현행	개정안																																								
R&D 세액공제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th> <th>중</th> <th>중소</th> <th>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0-2</td> <td>8-15</td> <td>25</td> <td>-</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20</td> <td>30</td> <td>최대10</td> <td></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30</td> <td>40</td> <td>최대1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0-2	8-15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10		<p>❖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점감구조 도입(일반은 공제율 상향)</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th> <th>중</th> <th>중소</th> <th>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0-2</td> <td>8-20</td> <td>25</td> <td>-</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20</td> <td>20,25</td> <td>30</td> <td>최대10</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30</td> <td>30,35</td> <td>40</td> <td>최대10</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0-2	8-20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25	30	최대10	국가전략기술	30	30,35	40	최대10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0-2	8-15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10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0-2	8-20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25	30	최대10																																						
국가전략기술	30	30,35	40	최대10																																						
통합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th> <th>중</th> <th>중소</th> <th>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5</td> <td>10</td> <td>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td> <td>12</td> <td></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15</td> <td>25</td> <td>4</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p>❖ 점감구조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를 확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th> <th>중</th> <th>중소</th> <th>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5,75</td> <td>10</td> <td>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9</td> <td>12</td> <td></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15</td> <td>15,20</td> <td>25</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1	5,7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9	12		국가전략기술	15	15,20	25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구분(%)	대	중	중소	추가																																						
일반	1	5,7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9	12																																							
국가전략기술	15	15,20	25																																							

#### 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현행	개정안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계속고용+탄력고용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기본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공제액(단위:만원)</th> </tr> <tr> <td></td> <th>중소(3년)</th> <th>중견</th> <th>대</th> <th>추가</th> </tr> <tr> <td></td> <th>수도권</th> <th>지방</th> <th>(3년)</th> <th>(2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그외 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추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공제규모(단위:만원, %)</th> </tr> <tr> <td></td> <th>중소</th> <th>중견</th> <th>대</th> <th>추가</th> </tr> <tr> <td></td> <th>수도권</th> <th>지방</th> <th>중</th> <th>대</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td> <td>2,200</td> <td>2,400</td> <td>1,200</td> <td>400</td> </tr> <tr> <td>그외 계속고용</td> <td>1,300</td> <td>1,500</td> <td>7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추가		수도권	지방	중	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대	추가																																																
	수도권	지방	(3년)	(2년)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구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추가																																																
	수도권	지방	중	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추가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공제액(단위:만원)</th> </tr> <tr> <td></td>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td> <td>1,300</td> <td>900</td> </tr> <tr> <td>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탄력고용</th> <th>중소</th> <th>중견</th> <th>대</th> </tr> </thead> <tbody> <tr> <td>임금증가율 3%~20%</td> <td>증가분의 20%</td> <td>10%</td> <td>-</td> </tr> <tr> <td>임금증가율 20% 초과</td> <td>20% 초과 증가분의 40%</td> <td>20%</td> <td>-</td> </tr> </tbody> </table>	탄력고용	중소	중견	대	임금증가율 3%~20%	증가분의 20%	10%	-	임금증가율 20% 초과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탄력고용	중소	중견	대																																																	
임금증가율 3%~20%	증가분의 20%	10%	-																																																	
임금증가율 20% 초과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																																																	
사후 관리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감소시 추징	사후관리 폐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고용 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 5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지역 포함)
신규취득 주택요건	가액상한 취득기한	공시가격 4억원 '24.1.4.~'26.12.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2)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시:

신규취득 주택요건	소재지	수도권 밖의 지역
	규모	전용면적 85m <sup>2</sup>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기한	'24.1.10.~'25.12.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2) 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행	개정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주식 등 제외]	제도 폐지

#### 2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1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해당시:

	현행	개정안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① 중소기업 ②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모든 중소기업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영위기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0~20년</td> <td>300억원</td> </tr> <tr> <td>20~30년</td> <td>400억원</td> </tr> <tr> <td>30년 이상</td> <td>600억원</td> </tr> </tbody> </table>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p>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영위기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0~20년</td> <td>600억원</td> </tr> <tr> <td>20~30년</td> <td>800억원</td> </tr> <tr> <td>30년 이상</td> <td>1,200억원</td> </tr> </tbody> </table> <p>②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한도 없음</p>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600억원	20~30년	8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600억원																	
20~30년	8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 2)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현행	개정안
사업무관 자산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대여금 등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제외

### 3)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공제대상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공제율	5%(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대상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25.11. 시행 예정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현행	개정안	
	일반	일반투자형	국내투자형 (신설)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 4천만원 (총 2억원)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가입제한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한도초과분) 9% 분리과세

## 2.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합니다.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24.11.이후)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3년(24~26년 혼인신고분)

####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비과세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

####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동일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40만원/인

####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제지원 내용	적용대상	
		현행	개정안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 2.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합니다.

####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15%	☞ 동일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 동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30%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동일

####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현행		개정안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총 소득기준
맞벌이	단독	2,200만원	☞ 동일
	홀벌이	3,200만원	☞ 동일
	맞벌이	3,800만원	4,400만원

### 3.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현행		개정안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 동일	
공제적용 소득	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① ☞ 동일 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내용	적용기한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세액공제	1년 연장 (~25.12.31.)

## 3.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 합니다.

####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		개정안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금액	인당 5천만원	인당 5억원

####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25.11. 시행 예정	'27.11. 시행 예정

####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현행	개정안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①, 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은 ②기준

####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사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 2.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합니다.

####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매출 10억원 이하)	☞ 동일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 동일
공제율	1.3%(27년 이후 1.0%)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 동일

####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개정안
공제액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부가가치세 1만원/건		양도소득세 2만원/건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500만원

### 3. 세원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현행	개정안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주식 등 추가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현행	개정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선택)	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예: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

- ① (대상) 사전 등록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 ② (절차) 등록업체는 물품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 ③ (효과)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검사방법 등 적용

### 2.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 1.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현행	개정안
경정청구 대상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

